

# 만주국의 종교정책과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

최 봉 룡 延邊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교수 (cuifl@hanmail.net)

## 1. 머리말

만주)는 우리 민족의 上古史에 있어서 민족 원류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에 해외 항일민족해방운동의 중요한 활무대로 부상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민족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하여 고대사와 더불어 근대에 이르러 만주에 이주한 재만 조선인<sup>2)</sup>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30년대 만주국시기의 재만 조선인에 대한 학계의 기존 연구를 살펴본다면 항일민족해방운동-민족주의 계열(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과 공산주의 계열(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에 편입되었던 조선인 부대)의 무장투쟁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또한 이러한 연구를 전제로 재만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정책-토지정책, 숙정정책, 집단이민정책, 집단부락정책 및 황민화정책 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활동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이 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활동이 대부분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에 부응한 친일적인 측면에 의한 懷疑에서 비롯되는 의도적인 회피인가, 아니면 이 시기 재만 한인들의 종교활동에 대한 중시가 부족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져보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1910-20년대 재만 조선인의 개별 종교 단체(기독교, 천주교, 대종교, 원종교)의 종교인들이 신앙적 차원을 넘어서 ‘국권회복’과 ‘민족독립’을 위해 종교를 사회결사의 모체로 삼고 교회를 배경으로 ‘민족정신은 교육으로, 단결은 종교를 통해 이룩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排日興韓’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종교를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면서 항일민족독립운동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역할과 작용에 대한 연구<sup>3)</sup>는 좀 많은 편이지만 30년대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

논문접수일: 2004년 6월 18일 게재확정일: 2004년 6월 25일

- 1) 만주지역은 오늘날 중국의 동북 3성 즉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포함하는 지역을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 산해관을 계선으로 하여 그 동북지역을 가리키는 지리적 개념이다. 광복전 까지 재만 조선인들은 이 지역을 흔히 만주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만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2) ‘재만 조선인’ 혹은 ‘재만 한인’이란 일반적으로 19세기 중엽부터 광복전까지 만주지역에 이주하여 생활한 ‘조선인’(혹은 한인)을 지칭한다. 광복전까지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에 대한 지칭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리웠는데, 청나라 시기 이주초기에는 흔히 ‘蠻民’·‘越嶺鮮民’으로, 중화민국시기에 ‘朝鮮人’ 혹은 ‘韓僑’ ‘韓人’으로, 만주국 시기에는 ‘鮮人’혹은 ‘朝鮮人’으로 불리웠다.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조선민족’으로 지칭되다가 1950년 11월 동북인민정부 공안부에서 중국 내의 소수민족으로서 ‘조선민족’과 조선교민을 구분하는 규정에서 ‘조선족’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1953년 8월 17일 중공 동북국에서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건국시간을 계선으로 그 전에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이나 또는 도시에서 가정을 이룬 조선인-조선인민은 중국국적에 가입한 ‘조선족’으로, 그리고 국적에 가입하지 않은 조선인과 건국 후에 동북에 들어온 사람을 ‘조선교민’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실상 ‘在滿朝鮮人’이란 개념은 ‘중국 조선족’이란 개념과 다르다.

에 대한 연구는 일부 개별적 신종교, 예컨대 대종교, 원종교, 천도교, 청림교를 제외하고 별로 취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개별적 종교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만주지역에서 그 종교의 활동을 언급하고 있을 뿐, 전체사적인 시각에서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신앙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空白’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을 전체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은 이 시기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본질을 재인식하고 재만 조선인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또한 이 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을 통해 종교민족주의의 역할과 한계를 實事求是적으로 평가하는데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은 그 당시 만주국에 있어서 그들이 처한 사회적법적인 위치 혹은 종교사적인 맥락으로 볼 때 그들의 종교 생활사는 근대 한국/조선종교사의 일부에 속한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접근방법은 종교(교회)사적인 각도에서 입각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사(역사)적인 접근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가 의도하는 목적과 서술할 내용을 간추려 말하면 첫째는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 종교 생활에 있어서 종교단체(혹은 종교인)들의 정치적 경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종교민족주의의 변동 양상과 더불어 그 한계를 밝혀볼 것이며, 둘째는 만주국시기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이란 기본적인 틀 속에서 재만 조선인의 사회적법적인 지위를 고찰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며, 셋째는 만주국시기 일제의 종교 정책의 규칙과 규제를 재만 조선인에 대한 통치정책-‘통제’와 ‘이용’이라는 두 개 측면에서 다룰 것이고, 넷째는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주요한 개별 종교단체가 시기적 상황에 따라 항일민족행방운동에 대한 태도 변화 및 중공 계열의 ‘민족통일전선’정책에 대한 호응과 그 동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 II. 일제의 재만 조선인에 대한 지배정책

### 1. ‘滿洲國’의 건립과 ‘朝鮮人問題’

1931년 9월 18일, 일본군은 심양부근의 남만철도 구간을 폭파시키는 이른바 ‘류조호사건’을 구실로 중국 동북군(국민혁명군)이 주둔하고 있던 북대영을 습격함으로써 중외를 진감하는 ‘滿洲事變’이 발발하였다. 이 ‘사변’은 일제가 일찍부터 시도해오던 ‘大陸政策’의 일환으로써 그것은 무력으로 대륙을 점령하는 시작이었다. 하지만 일본군

3) 여기서 在滿 朝鮮人の 宗教(혹은 個別 宗教團體)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朴永錫, 「大宗教의 獨立運動에 관한 研究」, 『史叢』 第21,22合輯, 1977.

“ ”, 「大宗教의 民族意識과 抗日民族獨立運動-壬午教變을 中心으로」, 『建大史學』 第4輯

金龍國, 「大宗教와 獨立運動」, 『白山學報』, 第4號, 1973.

千敬花, 「大宗教의 民族教育運動에 관한 研究-中國 東北地方(滿洲)를 中心으로」, 『白山學報』, 第27 號(1983.5)

홍종필, 「滿洲 朝鮮人 宗教問題 小考-1910~1030年을 中心으로」, 『獨立運動 관련 論攷』, 國學資 料院, 1995.

徐紘一, 「1910年代 北間島의 民族主義 教育運動(I, II)」, 『獨立運動 관련 論攷』, 國學資料院, 1995.

“ ”, 「北間島 基督教人들의 民族運動研究(I)」, 『神學思想』 第32輯, 1981.

閔庚培, 「日帝下 間島에서의 韓國基督教 過激獨立運動」, 徐紘一, 東巖 編著, 『間島史新論』 (상), 1993.

張亨鎮, 「日帝強占期 在滿韓人 宗教人的 民族正體性과 民族運動의 性格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97年.

尹善子, 「日帝下 天主教 信者들의 間島 이주와 民族運動」, 『釜山教會史報』 11, 1996.

“ ”, 「間島 天主教會의 設立과 朝鮮人 天主教信者들의 間島 移住」, 『全南史學』 11, 1996.

李光錄, 「延邊朝鮮族宗教概況」, 『朝鮮族研究論叢』 1, 延邊大學出版社, 1987.

줄 고, 「光復前 朝鮮族의 宗教信仰에 대하여」, 『中國朝鮮族史研究』 I, 연변대학교출판사·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 「在滿朝鮮人 反日民族獨立運動에서의 宗教의 歷史的 地位에 對하여」,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論叢, 『韓民族獨立運動史論叢』, 探究堂, 1992.

의 무력 침략에 대한 장개석의 不抵抗政策에 의해 장학량이 이끄는 동북군 22만은 대부분 관내로 이동(일부는 반만항일의 기치를 들고 동북의용군에 편입되고, 일부는 토비로 전락됨)함으로써 만주는 일주일 사이에 ‘태양기의 낙토’로 변하였다.

이듬해 2월 16일~18일, 奉天에서 이른바 ‘獨立’을 선포한 동북 3성의 거두인물들은 일본 관동군의 조종 밑에서 4頭會議<sup>4)</sup>을 開催하고 ‘자주 독립, 군벌타파, 평등대우’를 표방하는 「東北行政委員會宣言」을 반포하여 “즉시 지금부터 國民政府와 關係를 離脫하고 東北省區는 完全히 獨立”을 선언하였다.<sup>5)</sup> 그리고 2월 25일 신국가선설 및 통치원칙의 대강으로 동북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新國家組織大綱」을 만들어 新國家의 명칭은 ‘滿洲國’, 정치이념은 ‘民本主義’, 국가원수는 ‘執政’, 국기는 ‘新五色旗’, 정체는 ‘立憲制’, 국호는 ‘大同’, 수도는 ‘長春’(후에 新京으로 개칭함)으로 한다고 선포하였다. 2월 29일 「政府組織法」 및 「人權保障條令」을 제정하고 신국가의 기본 기틀을 확립한 후 3월 1일에 「滿洲國建國宣言」을 반포하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 溥儀를 ‘執政’으로 하는 ‘만주국’을 세웠다.

만주국은 ‘독립국’이라고 하지만 실제상 일본 관동군이 ‘독립국’이란 형식을 통한 독특한 지배 전략<sup>6)</sup>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는 ‘괴뢰정부’-새로운 식민지 형식의 국가였다. 만약 이 국가의 독립적인 형태를 인정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근대 국가’로 장식되었던 만주국은 하나의 다민족·다종교를 수용하면서 ‘禮教’-유교를 국교로 삼았던 종교적 국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째는 만주국의 법적인 의미에서 ‘만주국 국민(인민)’이란 개념과 그 범주 속에는 다민족

한족, 만족, 몽고족, 일본인, 조선인을 포함하는 ‘五族’과 더불어 다른 소수 토착민족들이 거주하였으며, 둘째는 만주국의 종주국인 일본제국과 만주국의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에 대한 통치를 위해 언제나 ‘大同建設, 王道樂土’를 이상적인 국가이념으로 내세우면서 ‘民族協和, 共存共榮’ 혹은 ‘民族平等, 信仰自由’를 표방하면서 민족문제와 종교문제에 대한 지배정책을 극히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는 유교를 국교로 삼고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제 즉 만주국의 권력 핵심과 통치 주체는 일본제국이었고 그 대행자가 일본 관동군이었으므로 이 국가는 ‘괴뢰정부’-‘식민지 국가’라는 성격으로부터 그 지배정책은 실제상 기본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이라는 본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런 이유로 재만 조선인에 대한 만주국시기의 지배정책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 있다.

‘滿洲國’의 건립과 그 통치시기(1932-1945)는 일찍부터 만주에 이주하여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던 재만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그들의 사회적 위치는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살피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종교 정책과 더불어 재만 조선인의 종교 생활을 고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주지하다시피 재만 조선인의 만주에로의 대량적 이주는 19세기중엽에 조선왕조의 붕괴적인 학정, 자연재해 등 경제적 원인으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정치적 원인으로 이주자와 망명자들이 많이 늘어 재만 조선인의 숫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변’ 직전에 이르러 그 인수는 약 백만에 달하였다. 그리

4) 1932년 2월16일~18일 奉天商埠에 있는 張景惠의 私宅에서 이른바 ‘獨立’을 선포한 동북3성의 거두인물인 熙洽, 馬占山, 臧式毅 등이 日本關東軍과 合議하여 ‘滿洲國’의 건립을 위한 ‘建國會議’를 말한다.

5) 永松淺造 著, 『滿洲建國誌』, 學友館版, 昭和17年, p.121.

6) 韓錫政 著,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학출판부, 1999, p.13.

고 만주국이 건립된 후 일제의 이민정책-‘집단지민정책’에 의해 만주에 ‘송출’된 조선인의 숫자는 계속 증가되었다.

재만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통치 방식은 시기에 따라 여러 형태<sup>7)</sup>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되는 문제가 바로 일제가 ‘대륙침략’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조선인문제’-즉 재만 조선인을 ‘보호’한다거나 혹은 ‘불령선인’에 대한 특별을 구실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인문제’는 항상 중일 양국의 외교적 모순의 초점으로 대두되어 마찰과 대립, 충돌과 분쟁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예컨대 1907년 8월 ‘간도문제’에서 ‘영토 귀속 불명’과 ‘한인 보호’를 구실로 용정촌에 설립한 ‘조선총독부간도입시과출소’를 효시로, 1915년 1월 「만몽조약」, 1920년 10월 ‘간도출병’, 1925년 6월의 「미쯔야협정」, 1930년 ‘만보산사건’ 등은 모두 일제가 만주의 ‘조선인문제’를 대륙침략의 도구로 이용한 전형적인 사건들이었다. 그리하여 심지어 일제는 만주사변은 재만 조선인을 군벌 통치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였던 것이다.

만주사변 전에 재만 조선인들 중에서 중국에 입적한 ‘귀화인’은 법적으로 중국인의 대우를 받았으나 입적하지 않은 조선인은 ‘일본신민’이란 신분으로 일본영사관의 치외법권에 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귀화했거나 하지 않는 재만 조선인은 모두 중일 양국의 틈새에 끼운 ‘중간자의 존재’로써 중국측은 그들을 일제의 만주침략의 ‘주구’ 혹은 ‘압잡이’로 오해를, 또한 일본측은 그들을 ‘불령선인’ 혹은 ‘赤化의 禍根’<sup>8)</sup>으로 지목하고 있었

다. 하지만 일제는 만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유지해감에 있어서 재만 조선인은 여러 민족들 속에서 그나마 가장 믿음직한 협조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만주국시기에 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은 공문에서 확인될 수 있다.

「滿洲國建國宣言」에서 ‘민족협화, 공존공영’을 국가운영의 기본방침-‘건국이상’으로 제시하면서 “무릇 신국가 영토 내에 있어서 거주하는 者는 種族의 岐視, 尊卑의 分別을 하지 않는다. 原有의 韓族, 滿族, 蒙族 및 日本, 朝鮮의 各族을 除外하고 기타 다른 國人들이 長久한 居留를 願하는 者도 역시 平等한 待遇를 享유할 수 있으며, 그들이 應當 얻어야 할 權利를 保障하며 그에 대하여 추호도 侵損하지 않는다”<sup>9)</sup>라고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각 민족의 ‘평등’과 ‘협화’를 주창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만 조선인은 만주국에서 ‘五族’의 하나로 일본인과 함께 만주국 국민의 주체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人權保障條令」에서도 “만주국에 거주하는 인민의 자유 및 권리를 보장”하고 “인민의 평등한 권력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sup>10)</sup>이라고 미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만주국에 있어서 일제는 종족우월주의론에 입각하여 일본인을 중심으로, 또한 재만 조선인을 ‘일본제국신민’의 일부분으로 취급하면서 “만주에 있어서 ‘五族協和’라고 하는 것은 內地人을 中心으로 하여 타민족이 協和한다는 意味로써 內地人이야말로 王道樂土建設의 主腦者로 되고 있는 것이다”<sup>11)</sup>라고 주장하였다. 즉 재만 조선인

7) 일제의 만주침략과 더불어 재만 조선인에 대한 지배정책을 시기에 따라 1907년 8월 통감부간도과 출소의 설립부터 1931년 만주사변까지 ‘통제’와 ‘이용’시기로,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37년 7월 중일전 쟁까지는 ‘통제’와 ‘안정’정책시기로, 1937년부터 1945년까지 ‘통제’와 ‘扶育’정책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일제는 중·일간 민족모순의 변화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켰지만 ‘통제’를 원칙과 전제로 하 면서 이용과 안정 및 부육이라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대륙정책을 위한 것이 다. 그러나 일제는 정치상에서 ‘보호’를, 경제상에서 ‘구제’, ‘원조’를, 문화상에서 ‘지지’, ‘개선’이란 간판을 내걸었 다.

8) 「間島集團部落建設概況」, 「朝鮮總督府調査月報」, 昭和十年 三月(第六卷 第三號), p.105.

9) 永松淺造 著, 「滿洲建國誌」, 學友館版, 昭和17年 p.129.

10) Ibid p.126

11) 香川幹一 著, 「滿洲國」東京: 古今書院發行, 昭和10年, p.136

은 만주국에서 여전히 만주국의 국민이라는 신분과 일제제국의 신민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는 존재로 되었는데, 이것은 일제가 이른바 ‘一視同仁, 五族協和’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본인을 중심으로, 재만 조선인의 지위를 편승시키는 형식을 빌어 민족 간의 모순을 조장시키는 기편 수단이었다. 일제는 만주국의 국가 ‘五色旗’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었다.

건국의 대정신은 그 국기(五色旗)에서도 엿볼 수 있다. 黃은 生成發展을 意味하고 赤은 赤心熱心을, 白은 純白淸淨을, 黑은 意志強固(혹은 勇敢 혹은 強靱)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각 민족을 表徵하면 黃은 滿洲族을 意味하고 赤은 赤心誠忠의 內地人, 靑은 支那人(服裝도 靑衣), 白은 鮮人, 黑은 蒙古人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東亞는 만주의 五色旗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五族協和가 필요하고 五族協和야말로 東亞新秩序의 골자로서 理想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sup>12)</sup>

이처럼 일제는 만주국에 있어서 ‘오족협화’라는 미명으로 일본인(朝鮮人을 포함)을 중심으로 민족적 차별 정책 즉 ‘오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종족)을 배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상은 ‘오족’의 순위를 일, 선, 만, 한, 몽으로 배열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중적 존재’인 재만 조선인이 만주국이라는 국가 속에서 일본인과 더불어 ‘특수한 위치’에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일제가 이러한 민족 차별정책을 실시한 목적은 만주국 안에 있는 여러 민족 간의 갈등과 모순을 조작함과 동시에 그러한 모순과 갈등을 역적으로 이용하려는

데 있었으며, 이러한 일제의 민족 간의 이간정책에 이용하기 위해 대리인 ‘희생품’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조선인들이었다. 때문에 일제는 만주국의 구성 민족에 있어서 조선인을 포함한 일본인-‘제국신민’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만주국에 있어서 일본인의 지위는 日本帝國臣民인 동시에 만주국의 中核的構成要素로 되고 있다. 이것은 절대로 所謂 二重國籍이라고 하는 것처럼 法律的 概念的인 關係가 아니라 사실 滿洲國의 本質에 由來되는 關係인 것이다<sup>13)</sup>.

1937년 12월, 일제는 「만주국에 있어서 치외법권의 철폐 및 남만주철도부속지행정권의 이양에 관한 조약」을 통해 치외법권의 철폐를 공식적으로 선포함으로써 만주국은 표면적으로 ‘완전한 법치국’, ‘민족협화의 건국이상’을 실현한 듯 하였지만, 실제상 사법재판에 관한 「특칙」<sup>14)</sup>과 「滿日司法事務共助法」<sup>15)</sup>을 제정하여 日系 즉 일본인과 조선인을 포함하는 ‘섭외사건’에서 특수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재만 조선인은 광복될 때까지 의연히 ‘일본신민’의 일부분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록 일제가 만주국시기에 재만 조선인은 “邦人(일본인-필자 주)의 만주에서 발전 특히 종래 定住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발전을 극도로 저해를 받았던 조선인에 있어서 天來의 福福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sup>16)</sup>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만주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민족에 비해 재만 조선인에 대한 ‘통제’와 ‘이용’정책을 병용하는데 있어서 그들은 필요한 특수 존재로

12) 香川幹一 著, 『滿洲國』, 東京: 古今書院發行, 昭和10年, p.147.

13) 滿洲帝國政府 編, 『滿洲建國十年史』 昭和7年, 東京: 原書房(1969), pp.9-10.

14) 「특칙」이란 외국인 중에 일본인에 대한 재판은 1, 외국인관계의 사건은 ‘섭외사건’이라고 처리한다. 2, 섭외사건처리하는 당분간 사법대신이 지정한 법원에 섭외정 및 섭외계신관관(日系)를 둔다. 3, 섭외정을 설정된 법원의 섭외사건에 관한 토지관할은 별도로 특칙을 설립한다. 4, 형사사건 중의 검찰사무에 대하여 검사관 외에 특히 日系경무지정관으로 검찰사무처리자 및 연락의 日系서 기관으로 검찰사무처리자를 두고 예전과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滿洲事情案內所編纂, 『滿洲帝國概覽』, 康德 9年, p.122)

15) 938년 4월에 공포한 「滿日司法事務共助法」에는 1, 소송서류의 송달 2, 증거조사 3, 범죄의 조사 4, 송구장의 발부 또는 집행 5, 채포장의 발급 또는 집행 6, 형사판결의 집행 등에 대해 일단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갖는 것인데, 이해 7월 15일 만주국과 조선, 관동주간에 사법사무공조에 관한 특례 를 세웠다.(『滿洲國概覽』 p.122)

16) 香川幹一 著, 『滿洲國』 東京: 古今書院發行, 昭和10年, p.282.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 2. 만주국시기 종교정책-‘통제’와 ‘이용’

1932년 3월 9일에 ‘집정’에 취임한溥儀는 그 이튿날에 신만주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과 「인권보장조례」를 공포되었다. 그 중 모두 12조로 작성된 「인권보장조례」의 제11조에는 “만주국 인민은 高利, 暴利 및 기타 모든 부당한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제3조에는 “만주국 인민은 종족, 종교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국가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sup>17)</sup>라고 규정되었다. 이것은 만주국이 근대적인 ‘독립국’, ‘법치국가’로서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 만주국의 ‘국민’ 혹은 ‘인민’에게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법적인 형식으로 확립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조목이다. 그리고 신국가의 국민정신의 함양을 위해 ‘왕도’를 국시로, 禮教-공교를 국교로 삼았던 만주국은 하나의 종교 국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만주국의 종교 정책은 과연 어떻게 제정되었고 또한 시기적 상황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지니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그 본질을 이해하고 또한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운동의 흐름과 맥락을 엿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주국이 건립될 때, 일제는 신국가의 국체를 둘러싸고 즉 공화제, 군주제, 입헌군주제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건국안’이 제기되었는데 비록 국체의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모두 ‘민족협화’ ‘민족평등’ ‘신교자유’와 같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예컨

대 1월 30일 金井章次는 「만몽자유국건설강령」을 관동군사령부에 제출하고 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일본인은 ‘직접 구성분자’로 신국가에 참가함과 동시에 ‘민족협화’에 기초해야 한다<sup>18)</sup>는 의도를 보여주었으며, 또한 관동군의 군법률고문인 松木俠에 의해 10월 21일 ‘滿蒙共和國統治大綱案’, 11월 7일에 ‘滿蒙自由國設立案大綱’이 제출되었는데 모두가 ‘民族의 樂土’ 혹은 ‘各民族의 平等한 發展’<sup>19)</sup>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신국가 종교정책의 기본적인 시정방침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한 것은 高木翔之助의 「滿蒙獨立建國論」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신국가’를 건설하는 방안에 있어서 문교정책의 일부분으로 종교문제에 대해 건국의 대업을 이끄는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었다.

“레-닌에 의해 창도되고 지금도 信教禁止하는 쏘베트연방을 제외하고 현대국가는 모두 信教의 自由이다. 만주공화국은 여하튼 이런 근대국가로서 生誕하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 각 개인은 그 욕망에 따라 종교를 신앙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 國籍의 如何를 막론하고 종교의 使徒로써 혹은 神佛의 이름으로 혹은 殿堂의 그림자에 숨어서 民心을 미혹하거나 또는 治安을 攪亂하면서 建設의 進運을 阻礙하는 言動이 있는 徒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鐵槌를 내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吾人은 특히 이 점에 대해서 건국의 대업을 이끄는 當事者의 注意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sup>20)</sup>

즉 새롭게 건립될 만주국이 ‘현대국가’ 혹은 ‘근대국가’의 명색을 갖추려면 이른바 ‘신교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17) 内山舜 著, 『執政溥儀』 東京: 先進社版, 昭和7年, pp.280~281.

18) 緒方貞子 著, 『滿洲事變と政策の形成過程』 原書房, 1966, p.208.

19) Ibid, p.212.

20) 高木翔之助 著, 『滿蒙獨立建國論』 東京: 國民外交協會發行, p.45. 이 책은 소화 6년 12월 초판 발행을 한 후에 그 이듬해 12월 까지 10차 발행된 책자로서 만몽침략에 대한 ‘일본제국의 국민’을 대표하여 제출한 그의 주장-토지상조권문제, 집단이민정책, 일본어보급정책 등은 후에 일제의 만주국시기 植民地政策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개인은 그 욕망에 따라 종교를 신앙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통치 즉 식민지 지배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가령 그 궤도를 벗어나는 행동·'민심을 미혹하거나 또는 치안을 교란하면서 건설의 進運을 阻礙하는 언동이 있는 도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쇠몽둥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건국의 대업을 이끄는 당사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이것이 곧 일제가 만주국사기에 실시한 종교정책의 본질인 이면성·한편으로 '신교의 자유'라는 간판을 내걸고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교회와 종교인)의 순응과 복종을 요구하면서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혹은 종교의 이름으로)의 역행은 '쇠몽둥이'로 때리는 '통제'·'압제'·'탄압'정책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용'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통제'에 있다고 한다면 그 '통제'정책은 곧 '이용'을 위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일제가 이러한 종교정책을 실시하게 된 이유와 동기는 만주국의 여러 민족들 속에서 가장 골치아픈 '조선인문제'·특히 재만 조선인들의 종교문제와 연관이 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찍 재만 조선인들의 '不逞運動'·반일 민족독립운동을 보면 대부분 종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일제가 만주국(혹은 '만주제국')이란 국가 기관을 통해 민국시기에 중국의 외교적 압력에 의해 재만 조선인들의 종교 활동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었지만 이 때에 이르러 괴뢰정부의 '법적인 근거'를 이유로 보다 自意自在로 지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1930년 4월 竹崎末雄이 간도일본총영사에게 '在滿鮮人問題'에 대한 11개

조항으로 된 시정방침의 개편(구제사업, 모범촌건설, 선도기관설치, 부업장려 등)을 요구하는 내용 중에 조선인의 종교문제를 하나의 '국책'으로 중요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었다. 즉

만주 특히 간도에 있어서 종교 상태는 실로 혼란하고 복잡하여 政黨化, 排日團化되고 있는데 전 중국의 반기독교 열정의 앙양되고 각종 종교 역시 동요되고 있으므로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統制刷新을 실제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특별시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sup>21)</sup>

만주국 초기 일제는 반만항일세력을 제거하는데 몰두하던 이른바 '整備時代'에는 종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조치가 별로 없었지만 우선 행정적으로 보면 만주국은 부의를 '집정'으로 하는 중앙집권제를 실시하였는데, 종교사무는 1부(府)3원(院) 8부(部)로 구성된 국무원 산하의 민정부 후생사에서 구체적으로 관장하였다. 1934년 3월 만주국은 '만주제국'으로 국호를 개칭한 후 '帝制'를 실시함에 따라 6장 37조의 「정부조직법」(후에 3차 개정함)과 12조의 「인권보장조례」를 개정, 반포하여 이른바 비교적 완벽한 식민지 체제·'근대 법치국가'<sup>22)</sup>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는데, 중앙의 1원 4부(府) 4院 9부(部) 1廳, 4局으로 구성된 국무원 산하의 民生部大臣은 교육, 예교, 사회, 보건 및 기타 민생안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민생부는 교육, 후생, 노무 및 보건의 4司로 구성었고 厚生司는 후생, 보호, 교화, 문화 4科로 나뉘어 ① 민생의 개선 ② 생활보호 ③ 군사원호 ④사회교육 ⑤ 宗教祀典 ⑥국민문화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면서 일련의 법적인 규칙이 등장하게 된다.

종교사무는 후생사 教化科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주관하였는데 각 성은 민생청(신경 특별시는

21) 竹崎末雄, 「在滿鮮人問題ノ研究并ニ對策上ノ私見」, 昭和5年 4月稿, 「滿洲事變前夜における在間島日本總領事館文書」上, 大阪經濟法科大學 間島史研究會, 1999年, p.334.

22) 황제-참의부-입법원-국무원-법원-감찰원으로 중앙행정기구를 구성, 중앙에 설치된 궁내부는 총무, 내무, 近侍, 掌禮 侍衛 등 5개 處를 두었는데, 장례처 典禮科에서 祭祀典禮를 관할하고 祭祀府는 建國神廟 및 그 攝廟인 建國忠靈廟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인데, 祭務處가 祭祀, 齋戒, 儀典등을 관할한다.

행정처)에서, 각 시,현(혹은 旗)에서는 教化處에서 관리하였다.<sup>23)</sup> 그리고 만주국은 종교정책의 제정과 실행을 관민병행의 방침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가의 기관인 동시에 국민의 기관으로서 만주국 건국과 함께 건국의 이상을 국민의 손으로 완성시킨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唯一永久, 舉國一致’의 실천조직체이고 정부와 표리일체로서 ‘건국이상의 실현’ ‘도의세계의 창조’를 지향하는 국가단체인 ‘협화회’<sup>24)</sup>에서 종교간의 분쟁이나 마찰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만주국시기의 종교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또는 어디까지나 일제의 수요에 따라 개정, 변화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일제는 만주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과시적 조치를 강화하였는데, 이러한 시세의 급변에 따라 만주국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한 종교정책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1938년 9월 24일 民生部大臣 孫其昌의 서명으로 반포된 民生部令 第93호 『暫行寺廟及布教者取締規則』(이하 「규칙」으로 약칭함)에는 만주제국의 종교정책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모두 14조로 구성된 이 「규칙」에는 사묘(사찰, 교회, 포교소를 포함-제1조)의 설립, 이전, 병합, 폐교 및 포교자(주지, 승려, 도사, 목사, 선교사 등 종교 교의의 선포 또한 종교상의 의식 집행에 종사하는 자-제1조)는 모두 민생부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은 사유, 명칭, 설립지, 종파 계통, 국내 또는 국외에 있어서 다른 사묘와 本末 관계; 主祀 및 配祀의 神佛, 祭禮의 명칭 및 그

기간; 堂宇의 지경내 부속건물의 위치, 종별, 구조, 용도, 면적 및 도면과 함께 경내지의 면적, 도면 및 주위의 상황, 설립 비용 및 그 지불 방법; 건축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포교방법, 유지방법, 사묘의 대표자로 되는 자의 성명, 본적, 현 주소, 생년월일, 이력과 자격 및 그 증명서, 포교자의 실명 및 인원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규칙」의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보면 “민생부대신은 사묘에 있어서 공익에 위반되고 기타의 존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설립의 허가를 취소”하며, “사묘의 대표자가 본령의 결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고 태만할 때는 민생부대신 또는 所轄 성장 혹은 신경특별시장은 대표자의 허가를 취소”하며, “所轄 성장 또는 신경특별시장은 포교자에 대해 공안 또는 풍속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포교와 기타 교무의 집행을 정지 또는 금지”시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사묘의 설립, 폐지, 병합 또는 이전을 하는 자는 2백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혹은 과료로 처리한다”<sup>25)</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볼 수 있는 바, 만주국은 복합민족국가에 있어서 여러 민족의 다양한 종교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국민의 신교자유’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만약 ‘공익에 위반’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인정될 때는 금교, 벌금, 구류 및 科料로 처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안법」에 따라 형사안건으로 처리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건국 신묘에 대해 불경하는 자는 ‘不敬罪’로 1년 내지 7년까지 도형에 언도한다고 규정되었던 것이다.<sup>26)</sup>

23) 滿洲事情案內所編纂, 『滿洲帝國概覽』, 康德 9年(1942), p.54.

24) ‘협화회’는 1932년 7월 25일 설립, 중앙본부 이하 수도와 각 현,시 지국에 본부를 통제지도기관으로, 분회가 주체로 담당하는 사상적 교화적 정치적 실천조직체이고 만주제국의 정신적 모체로서 이공작은 정신공작, 후생공작, 선덕공작 등 3가지 공작으로 대별되는데, 그 중 후생공작은 건국이상의 달성 과정에 있어서 국민생활상의 여러 가지 마찰, 불편의 배제 및 시정공작을 말한다. 즉 민족 상호간, 관민간, 종교간, 노자간의 마찰을 배제하고 혹은 정치상 경제상의 민복을 증진하고 민중을 보호구제를 조장하는 것이다. 1940년(강덕 7년) 중앙본부 산하에 성 본부 19개 시, 현(기) 본부 105개, 기구본부 20개 모두 164개 본부에 3,522개 분회, 회원이 1,510,676명, 그 중에 간도성에 6개 본부, 55개 분회, 회원은 총 51,044명이었다.(滿洲事情案內所編纂, 『滿洲帝國概覽』, 康德 9年(1942) p.84)

25) 滿洲事情案內所編, 『滿洲の宗教』, 康德6年(1939), pp.77-81.

그러나 만주국은 이 「규칙」을 민족에 따라 차별성 있게 적용했는데 그 「부칙」의 의하면 라마샤묘 및 라마에 대해선 이 「규칙」을 당분간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규칙」에 따라 각 성에서도 포교자의 자격 획득 조건 및 포교자신분증명서 관리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간도성의 경우를 본다면 1939년 2월 2일에 반포한 간도성령 제5호 「間島省布教者身分證明書發給規則」(이하 「포교자신분규칙」으로 약칭함)에 의하면, 민생부령 제93호에 근거하여 포교자신분증명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모두 11조로 규정하였는데, 그 중 제3조 포교자는 그 신분증명서를 받을 때는 所管 현장을 경유하여 성장에게 청구해야 하며 그 유효 기간은 5년, 그리고 제3조와 제10조에 “신분증명서를 타인에게 轉借 혹은 양도하지 못하며 혹은 내용을 고치면 몰수”하며, 특히 제11조에는 「잠정규칙」의 제11조, 제12조에 근거하여 “포교자의 시묘 대표자격의 허용을 취소하거나 혹은 포교자의 포교 및 기타 교무의 집행을 금지할 때는 신분증명서를 몰수한다”<sup>27)</sup>고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만주국의 종교 정책은 일제의 전시체제의 기본 틀에서 하나의 중용한 구성 부분으로 작동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만주국은 초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예교’-孔敎를 국민윤리의 규범으로 한 다음 전국적으로 부흥된 것이 文廟祭祀였다. 그리하여 왕도를 국시로 하는 만주국은 전국에 88개 소의 문묘를 세우고 國祭로 춘추 2회 제사를 春丁祭孔와 秋丁祭孔이라고 불러 국가 제사로서 성대한 祭典을 행하고 있었으며<sup>28)</sup>, 또한 동양 古來의 孝悌仁義의 미덕을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국 이래 정부는

孝子節婦의 표창을 실행하여 일반의 儀表로 表彰狀 및 褒賞品을 수여하였다.<sup>29)</sup> 그러나 만주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체제가 날로 강화됨에 따라 일제는 만주국의 국본이 ‘惟神之道’에 있음을 이유로 또한 이른바 ‘일만일심일덕, 불가분일체’를 이유로 ‘왕도’-유교 윤리를 國是로 국민도덕의 최고 원리로 내세우다가 차츰 ‘황도’-일본 고유의 황도 사상을 國本으로 삼았기 때문에 ‘국시’로서의 ‘왕도’는 ‘국본’으로서의 ‘황도’에 의해 대체되었다.

1935년 5월 2일, 만주국 황제 부의는 「回鑾訓民詔書」를 반포하여 만주제국 황제와 일본제국 천황과의 ‘정신일체’를 확인했고 1940년 5월 15일 「國本奠定詔書」를 반포하여 만주제국은 “천조대신의 神麻와 천황폐하의 보호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sup>30)</sup>면서 天照大神을 建國의 元神으로 삼고 건국신묘를 창건하였는데, 이것을 만주국의 ‘정신적 건국’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만 양국의 정신적·영혼적인 一體를 법적인 제도로 합리화하기 위해 그 해 7월 15일 「조직법」을 개정하여 “황제는 나라의 제사를 행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사부관제」 및 「建國神廟祭祀令」을 새롭게 반포함으로써 만주국은 명실공히 정교일치, 즉 과거의 유교적인 ‘왕도정치’는 완전히 ‘황도정치’로 바뀌게 되었으며, 天照大神은 여러 종교들의 신들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국신·만주국의 원신’으로 최고 무상의 위치를 갖게 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황도정치’-‘황민화’의 합법성에 대해 “만주국은 日本國體原理의 發展이고 天皇의 大御心 天照大神의 神意의 顯現이지만 그것을 自覺하고 認識體得하는 것은 우리 國民이 建國工作에서 實踐과 反省의 結果”<sup>31)</sup>라고 해석하였다.

이로서 일제는 만주국 국민들로 하여금 ‘신사

26) 延邊朝鮮族自治州檔案局(館)編, 『偽間島省概況』, 1983, p.71.

27) 間島省公署編纂, 『間島省例規集』, 滿洲行政學會發行, 康德7年(1940), P.8.

28) 滿洲帝國政府 編, 『滿洲建國十年史』, 昭和7年, 東京:原書房, 昭和44年出版, p.690.

29) 滿洲事情案內所編纂, 『滿洲帝國概覽』, 康德 9年(1942), p.290.

30) 滿洲帝國政府 編, 『滿洲建國十年史』, 昭和44年(1969), p.25. 만주국의 황제가 천조대신을 奉祀하는 祭祀를 ‘御神祭’라고 하는데 그것은 大祭, 中祭, 小祭로 나뉜다.

참배'를 강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셈이었는데, 이것은 일제가 만주국을 '근대 국가'라고 표방하면서도 일만 두 제국의 '영혼일체', '일심일덕'을 위해 만주국 국민의 기존의 정신적 신념과 종교적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정신적으로 모두 하나의 '황국신민'으로 만들려는 목적에서 실행한 민족동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만주국시기 종교정책은 일제가 만주국에 대한 식민지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고 또한 식민지통치를 위한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종교정책-‘왕도정치’에서 ‘황민정치’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게 된다.

### III.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

재만 조선인의 종교 생활은 그들이 만주에 이주하여 삶의 터전을 만들고 정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재만 조선인은 고국에서의 전통적인 종교 생활의 경험과 더불어 고달픈 이주·개척 생활에서 정신적 안위를 찾기 위해 여러 종교에 귀의하여 각종 종교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초기 조선인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공동체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종교신앙의 종류를 보면 외래 종교-기독교와 천주교, 전통 종교-유교와 불교 및 신종교-동학교계의 천도교, 시천교, 제우교, 수운교, 청림교, 원종교, 단군교계의 단군교, 대종교 및 吁咷教계의 태을교, 보천교, 증산교 등이 있었고 또한 무속과 같은 민간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각 개별 종교에는 교파가 많았는데 ‘종교의 왕국’으로 불리던 북간도에만 19개 종파가 있었다.<sup>32)</sup>

특히 1910년대 만주지역에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종교인인 동시에 교육자로서 그들은 근대적 계몽교육운동과 종교운동을 결합시키면서

‘종교 혁명’-‘종교구국’의 슬로건을 내걸었고, 또한 외국선교사들이 그들의 반일독립운동에 대한 동정에 힘입어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은 크게 부상되었으며, 일부 신종교-대종교와 원종교는 국내에서 일제의 종교 탄압에 의하여 반일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그 본부를 만주에 이전하여 반일 계몽운동과 무장독립운동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천교, 제우교와 같은 친일적인 종교는 일제의 세력을 배경으로 주구노릇을 하면서 전파되었기 때문에 배일적인 분위기가 강하였던 조선인 사회에서 냉대를 받음으로써 그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못했다. 그리하여 재만 조선인의 종교 단체는 일반적으로 일제에 대한 정치적 태도에 따라 ‘배일 종교’와 ‘친일 종교’ 혹은 ‘순수 종교’로 대별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무력 탄압, 중국측의 압제 및 사회주의운동의 흥기와 더불어 일어난 ‘반종교 운동’으로 말미암아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은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었고, 또한 일부 개별 종교는 점차 배일의 기치를 포기하고 ‘순수 종교’로 전락되다가 만주국이 건립됨에 따라 또 다시 ‘부흥’하게 된다. 지역적으로 보면 종교 활동의 중심은 재만 조선인의 제일 큰 집거구인 북간도였는데, 특히 유교, 불교와 신종교 중에 대종교, 원종교, 청림교는 대부분 북간도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제의 탄압에 의해 대종교, 원종교는 그 무대를 점차 북만으로 옮기고 청림교는 ‘대성유교’로 개종하게 된다. 만주사변 전의 북간도 조선인의 종교 상황과 그 동태에 대한 일제의 전체적인 평가를 본다면

間瓊地方(북간도-필자 주) 宗教의 歷史는 不逞運動과 密接不離의 關係를 갖고 宗教信徒는 모두 不逞運動의 勢力으로 化했던 것이다. 때문에 대정 9년 日支協同不逞鮮人討伐은 곧 不良宗教討

31) 滿洲帝國政府 編, 『滿洲建國十年史』 昭和7年, 東京: 原書房(1969), p.29.

32) 沈茹秋 著, 『延邊調查實錄』, 延邊大學出版社, 1987, p.59.

伐이었고 宗教界에 一轉機도 가져오고 外國宣教師를 背景으로 하던 獨立運動의 信徒도 점차 흩어지는 兆候를 보여주는데 이르렀다. 그리하여 배일사상의 잠재세력은 지금 往年의 武力的民族獨立主義로부터 思想的社會革命主義에 轉換하여 宗教를 背景으로 한 老壯年者의 排日運動은 學校를 地盤으로 하고 赤露를 背景으로 青年學徒의 손에 劃策되고 있다.<sup>33)</sup>

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재만 조선인의 종교는 ‘불령운동과 밀접불리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불령운동의 세력’으로 되었지만, 이른바 1920년 10월 ‘간도출병’-‘불량종교특별’에 의하여 종교를 배경으로 하던 노장년들의 배일운동은 학교를 기반으로 赤露를 배경으로 청년들의 운동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북간도를 중심으로 만주 지역에 사회주의 사상이 관류됨에 따라 전반 재만 조선인의 사회적 풍조는 과거의 종교적 분위기에서 점차 비종교적인 사회운동-공산주의 사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세대의 교체와 사상·이념의 전환시기에 많은 청년들은 종교신도로부터 새로운 정치적 신앙-공산주의를 신앙하는 신도로 변모하게 되었는데 청년들 속에서 종교를 믿지 않는 것은 진보적인 표징, 인격적인 향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sup>34)</sup>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25년도 북간도지역 조선인의 종교 상황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1]에서 1925년 북간도 조선인의 종교상황을 보면 교회(혹의 사원)가 모두 154개 소, 총신도수는 37,073명인데 그 중에 예수교(기독교, 천주교) 계통의 신자 수는 약 47.3%로서 제1위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유교는 27.3%, 천도교는

10.0%, 시천교는 8.4%, 대종교는 5.7%의 순서로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친일 종교인 시천교가 북간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주요하게 일본영사관의 관할 구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남만과 북만의 종교 상황을 보면 이 시기에 남만에는 예수교가 39개 교회에 신도수가 1만 2,700여 명이 있었는데 특히 제우교의 친일 세력이 큰 영향력을 보이면서 그 신도가 6만 여 명에 달하고 있었다.<sup>35)</sup>

[표1] 북간도 조선인 종교 상황(1925년6월調)

종교	구별	교회	신도	비례
예수교	장노교파	61	6,293	16.9
	남감리교파	14	1,513	4.1
	성결교파	7	288	0.8
	안식교파	2	164	0.4
	천주교파	32	9,320	25.1
	계	116	17,548	47.3
유교	대성유교파	2	86	0.2
	공교회파	3	30	27.3
	계	5	10,225	27.6
신종교	천도교	2	3,686	10.0
	대종교	3	2,109	5.7
	청림교	1	30	0.1
	원종교	5	272	0.7
	시천교	8	3,109	8.4
	제우교	1	51	0.1
불교	3	43	0.1	
합계		154	37,073	100.0

[자료]: ① 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課, 『滿洲及西比利亞地方に於ける朝鮮人事情』 昭和2年, pp.77-91  
 ② 白山學會 編, 『獨立運動 관련 論攷』, 1995, p.654 참조.

천도교는 죽안현을 중심으로 약 300명, 흥경현에 약 200명 신도가 있었다. 길림지구는 손정도 목사의 영향하에 감리교파가 중심 세력을 이루었고 북만의 하얼빈, 해림에 3개 교회, 신도는

33) 川口忠 編, 『開島輝春北鮮及東海岸地方行脚記』 昭和7年2月, p.139.

34) 출고, 『日帝下 在滿韓人の 宗教運動-1910~20년대 北問島를 中心으로』, 『宗教研究』 第31輯(2003년 여름, 韓國宗敎學會), p.280.

35) 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課, 『滿洲及西比利亞地方に於ける朝鮮人事情』 昭和2年, p.79.

[표2] 북간도지역 조선인 종교상황(1930年6月調)

종교	지역	연길현		화통현		왕청현		훈춘현		계	
		교회수	신도수	교회수	신도수	교회수	신도수	교회수	신도수	교회수	신도수
예수교	캐나다장로회	37	3,464	11	1,179	2	224	16	1,062	66	5,929
	남감리교과	11	826			6	659	6	581	23	2,066
	동아기독교과	2	90	1	40	1	31	2	123	6	284
	안식교과	3	136	1	87					4	223
	천주공교과	27	7,307	2	596	1	58	11	964	41	8,925
	계	80	2,823	15	1,902	10	972	35	2,730	140	17,427
유교	대성유교	2	2,335							2	2,335
	공교회	1	1,000	1	216	1	320			3	10,536
	계	3	12,335	1	216	1	320			5	13,871
신종교	천도교	13	2,131	1	163	1	104			15	2,399
	대종교	1	9			1	30			2	39
	원종교	4	310							4	310
	시천교	9	1,253							9	1,253
불교	불교	6	209			1	32			7	241
	합계	116	28,071	17	2,281	14	1,458	35	2,730	182	34,540

[자료] : 川口忠 編, 『間島琿春北鮮及東海岸地方行脚記』 昭和7年2月, pp.145-146 玄圭煥 著, 『韓國流移民史』(上), 1967, p.519 참조  
 備考: ①교회수는 사원을 포함하고 있음. ②전년에 비해 신도 수는 306명 감소되고 있음  
 ③청림교는 자연소멸 상태라고 하지만 대부분 신도들이 대성유교로 개종함.

[표 3] 1934~1936年 在滿朝鮮人 宗教狀況 比較

시간	종교	기독교		천도교		시천교		불교		유교		기타		합계	
		교회	신도	교회	신도	교회	신도	교회	신도	교회	신도	교회	신도	교회	신도
1934		162	31,886	17	1,933	7	751	14	2,446	5	17,794	1	126	206	54,936
1936		233	38,251	14	2,039	9	891	23	3,899	5	14,515	9	1,515	293	61,156

[자료]: ①1934년 통계는 「在滿朝鮮人概況」 ②1936년 통계는 「在滿朝鮮人現世要覽」  
 ③기타 종교에 대종교가 포함되는데, 그 신도수는 1,022명임  
 玄圭煥 著, 『韓國流移民史』(上), 1967, pp.520-522 참조

120명으로서 교세는 미진한 형편이었다.

1930년에 이르러 북간도 조선인의 종교상황을 아래 [표 2]에서 보면 교회 혹은 사원의 총 수는 116개 소, 신도 수는 34,540명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주국시기에 이르러 재만 조선인의 종교 상황을 보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아래 [표 3]의 통계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1]과 [표2]는 북간도지역 조선인들의종교 활동이 위축되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면 [표3]은 만주국이 건립된 후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이 '부흥'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만주국시기에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은 왜 이처럼 '부흥'하는 국면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어떠한 태도로 부응하면서 자아 보존을 위한 '친일·반공'적인 입장을 보이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보기로 하자.

위의 [표3]에서 보면 1934년에서 1936년에 이르는 사이에 기독교는 교회 162개 소, 신도수가 31,886명에서 교회 233개 소에 신도수는 38,251명으로, 불교는 14개 소 사원에 신도 2,436명에

서 23개 사원에 3,899명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천도교 및 기타 종교도 여전히 그 교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재만 조선인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남만과 북만으로 포교 지역의 확대 및 종교에 대한 일제의 ‘이용’ 정책에 기인된다고 본다. 다만 유교는 그 신도수가 감소되고 있는 원인은 주로 내부의 갈등과 분화 및 북간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적 혼란에 기인된다고 사료된다.

그럼 아래 민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각 개별 종교 활동에 대해 세 가지로 유형 즉 전통 종교-유교와 불교, 외래 종교-기독교와 천주교 그리고 신종교로 나뉘어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다만 일제가 재만 조선인의 종교에 대한 ‘통제’ 정책으로 실행한 탄압사건은 주로 신종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신종교는 별도로 한 개 장절로 설정하여 서술한다.

## 1. 전통 종교-유교와 불교

(1) 유교-재만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유교는 일찍부터 전통적인 사회적 윤리와 도덕적인 규범으로 되었으며 그것이 종교 단체의 형태를 갖추고 활동을 한 것은 1912년에 연길공교회가 건립하고 유림인들이 ‘간도공교회’의 이름으로 중국의 전국공교회총회에 가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북간도지역 조선인들의 유교는 20년대 중반에 연길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회파와 용정의 대성유교-‘용정문묘회’와 대성원파-‘대성원동만총지원’으로 나뉘었는데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한 때는 공교회가 지방당국으로부터 해산령을 받기도 하였다가 다시 회복되었다. 민주국 전에는 민간 조직체의 형태로 많이 활동하였기 때문에 흔히 ‘유림회’ 또는 ‘儒林契’라고 불렀다. 민주국시기에 유교는 ‘국교’로

서 국가적 차원에서 제창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은 북간도를 중심으로 신속히 확대되었다.

민주국이 건립된 후, 1933년 9월 용정문묘와 대성원동만총지원은 ‘동만유교회’로 합병되었다가 그 이듬해에 內訌으로 인하여 다시 분열되었다. 민주국시기 유교는 용정, 연길, 화룡, 두도구 등 곳에 ‘향교’를 세우고 각 농촌에서 掌儀, 都訓長, 都有司, 校監, 有司를 선거하여 향교, 서당 및 문묘를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삼강오륜과 충군애국을 국가적 차원에서 선양하면서 공자묘를 수축하고 춘추 2회씩 공자제를 지냈다. 연길을 중심으로 각지에 명륜소학교가 건립되었고 1940년에는 중등학교 왕도서원을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공맹지도를 주입시켰다. 1936년 6월의 통계에 의하면 간도지역에 5개소 교회, 신도수는 54,515명에 달하였다.<sup>36)</sup>

당시 일부 유림인사들은 유교학파의 전통을 계승하여 ‘향약’을 작성하고 「주자가례」의 예의규범으로써 ‘소중화’ 사상을 고취하면서 일제의 ‘신도’ 사상을 반대함으로써 비록 보수적인 폐습도 있었지만 민족문화를 보존, 계승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특히 1938년 이후, 민주국에서 일제의 황민화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창씨개명, 조선어 취소가 중요되자 향약에선 민족 언어를 가르치고 민족 역사와 문화를 전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부 유림회는 일제에 ‘이용’되어 친일적인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예컨대 1935년 왕청현 배초구와 쌍하촌의 ‘유림회’는 국가가 유림회의 지회로 설립되었는데 친일분자의 배후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sup>37)</sup>

(2) 불교- 불교는 주요하게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전파하였는데 다른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36)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4-결전』, 1991, 민족출판사, p.579

37) 『汪清文史資料』 第2輯, 1990, P.8.

정치적 색채가 그다지 없는 ‘순수 종교’로서 그 영향력은 크지 못했다. 하지만 배일 감정이 농후하였던 북간도지역에서 조선인 불교 신도들의 배일 정서는 유순하게 표출되기도 하였다. 1925년의 통계에 의하면 간도지역에 절당 7개, 신도는 1,923명이었다.<sup>38)</sup> 20년대 초에 일본 불교인 曹洞宗間島別院, 本願寺布教所가 간도에 그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本願寺 慈濟醫院을 꾸리고 조선인에 대한 포교에 노력하였지만 배일 분위기가 높았던 그 당시에 조선인 불교 신도들의 배척을 받았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기록에서 조선인 불교 신도들의 배일감정을 엿볼 수 있다.

대정10년 我軍의 간도토벌사건 이후, 本願寺布教師 上野興仁이 來間하여 朝鮮人指導의 포교소를 열고 의료기관도 부설하면서 포교에 크게 노력하였지만, 배일 분위기가 濃厚한 鮮人分子는 官僚의 走狗라 부르면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 다음은 대정 14년 12월 上野師의 후임으로 來間한 天兒昊師가 在任하여 내선인의 교화에 노력하고 있다. 鮮人信者는 언제나 政治나 思想方面으로 나아가고 純眞한 教義의 信奉에는 興味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天兒昊師가 來任한 후에도 역시 格別한 效果를 올리는 일은 困難이 있었기에, 소화3년에 鮮人僧侶가 經營하는 大覺敎會가 설립됨에 따라 信者의 대부분이 거의 그 곳에 갔기에 本願寺布教所로부터 흔적은 단절하기에 이르렀다.<sup>39)</sup>

만주국이 건립된 후, 화룡현 약수동에 감로사, 도문 희막동에 화엄사, 삼도구 송리평에 학룡사가 증설되었는데, 1934년에 14개소 절당에 신도수가

2,441명<sup>40)</sup>이던 것이 1936년에는 그 신도수가 3,301명<sup>41)</sup>으로 늘어났다. 만주국시기에 간도지역의 불교는 크게 두 개 파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조선불교계의 귀주사파와 대각사파를 위수로 하는 일파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불교계의 정토종, 조동종, 선종파를 위수로 하는 일파였다. 당시 일제와 만주국정부는 불교를 부촉하는 희유정책을 폈고 또한 불교는 이 기회에 이른바 ‘戒烟·戒酒’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교세가 조금 확대되는 조짐을 보였다.

남만과 북만에 일부 조선인 불교 신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 길림시 개봉가 51번지에 자리잡은 계림사의 민족유지들은 일찍 ‘불교정신으로 조선인의 전통적인 풍속습관을 계승할 것을 주장’<sup>42)</sup> 하였지만 만주국시기에 들어와서 순수한 신앙활동에로 나아갔다. 당시 계림사 안은 불당과 영당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 불당에는 불상이 있고 영당에는 사망한 노인들의 유골을 모시고 있었다. 1938년 9월 만주국 민생부의 「잠정규칙」이 반포되고 종교에 대한 일제의 통제와 압제가 심해짐에 따라 재만 조선인들의 불교도 조선의 불교협회의 조종밑에 각파들이 ‘협회’에 망라되어 친일 사상과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에 순종하면서 교세를 확보하기에 힘썼다. 1944년 10월 간도성에 20개소 절당, 신도수는 4,578명에 달하였다.<sup>43)</sup>

## 2. 외래 종교-기독교와 천주교

- (1) 기독교(신교)-기독교는 일찍부터 남만의 조선인들 속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남만에서, 그 후에 간도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차츰 북만으로 확대되었는데 그 교파는 장노

38) 『建設途上の間島』, 昭和10年, P.40.

39) 川口忠 編, 『間島琿春北鮮及東海岸地方行脚記』 昭和7年, p.137.

40) 玄圭煥, 앞의 책, P.567.

41) 李光祿, 「延邊朝鮮族宗教概況」, 『朝鮮族研究論叢』 (一), 延邊大學出版社, p.266.

42) 金澤 主編, 『吉林朝鮮族』, 吉林人民出版社, 1993, p.457.

43) Ibid, p.266.

교파, 감리교파, 동아기독교파, 조선기독교회, 성결교파, 안식일교파 등이 있었다. 상술한 기독교의 여러 교파들 중에서 만주국시기에 이르기까지 장노교파와 감리교파는 각기 교세 확장을 위해 줄곧 세력 다툼을 하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과시하였기 때문에 이 글에서 필자는 주로 이 두 개 교파에 대해 언급한다.

앞의 「도표 2」에서 보듯이 1925년에 이르러 기독교 활동의 중심은 간도지역으로 옮겨졌는데 교회당 61개소, 신도수는 6,293명으로서 총신도수의 16.9%를 점하여 각 교파 중에서 첫 순위에 있었다. 이것은 과거 장노교파가 반일운동에서 가장 적극적이었고 또한 외국선교사들의 동정과 지지가 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당시 남만에 통화를 중심으로 20여개 교회와 2천 여명의 신도(유하현 합니하에 550명, 유하현에 5백명, 즈안현 2백명)<sup>44)</sup>가 있었고 봉천 부근 및 철령, 홍경에도 신도들이 있었는데 조선인 목사와 신도들은 “압록강을 끼고 양안에 사상계의 별천지를 건설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었다. 당시 통화성 내의 조선인들은 독립적인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모이면 그 수가 적을 때는 어느 신자의 집에서 예배를 보고 많을 때는 중국인 교회를 빌려서 함께 보거나 또는 중국인들이 예배를 본 후에 借入하면서 쌍방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보다 조선인 신도수가 훨씬 급증하는 효과를 목격한 중국인 목사는 “영국 선교사의 지도하에 있는 우리들은 수십년이란 시일을 들어도 겨우 7백 명의 신도를 얻는데 지나지 않지만 鮮人は 2~3년 사이에 2천 명의 개종자가 있는 것은 놀랍다”<sup>45)</sup>고 말하였다. 이것은 재만 조선들의 종교적 심성이 중국인들 보다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인 열정이 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만주사변 전에 만주의 장노파는 남만노회(1920년)와 동만노회(1925년 간도노회의 개칭)가 병립하고 있었는데 만주국시기에 그 세력은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 1931년에 남만노회 관할 내의 신자들이 북만지역으로 이주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북만노회가 설치되었고 동시에 조선총회에서는 전수창목사를 파송하여 목단강시를 중심으로 길림, 둔화 등 곳에서 포교하였다. 1935년에 김창덕목사의 전도에 의해 남만철도연선과 내몽고지역까지 관할하는 봉천노회가 신의주 의산노회에서 분립되어 설치되고 1932년 용천노회에서 김광현목사를 영구에 파송하여 전도하게 함으로서 1937년에 영구노회가 설치되었다. 이리하여 1937년에 이르러 6개 노회가 조선 국내에서 분리되어 각각 재만 조선인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1936년의 통계에 의하면 만주의 조선인 기독교 신도가 38,900여명 있었는데 그 중 장노교파 신도가 22,100여명 달하였다.<sup>46)</sup> 일제는 날로 확대되는 장노교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1939년 9월 15일 지시를 내려 전만주 장노교파 대표 32명이 신의주 제2교회에 모여 ‘전만조선예수교장노회연합회’를 조직하도록 함으로써 만주 내의 조선예수교장노파 각 교회를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초대 연합회장에 봉천시 서탑교회목사 정상인이 취임되었다. 1940년 통계에 의하면 만주 내의 장노교파 예배소 208개소, 교회 167개소에 신도수는 모두 17,073명이었는데 그 중 동만(간도)의 예배소 122개소, 교회 96개소에 신도수는 9,793명으로써 총신도수의 약

44) 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課, 『滿洲及西比利亞地方に於ける朝鮮人事情』, 昭和2年, p.78.

45) Ibid, p.78.

46) 『조선민족발자취총서4-결전』 북경: 민족출판사, 1991, p.580.

60%에 달하였다.<sup>47)</sup>

이와 반면에 감리교파(남감리교, 미감리교)는 남만 및 북만지역을 포교중심으로 삼고 그 세력을 확장하였는데 특히 길림지구에서 감리교파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다. 1928년 길림 일본총영사관의 통계에 의하면 감리교파는 67개 교회에 약 2천명의 신도를 갖고 있었으며 북만의 하얼빈과 해림에 3개 교회에 120여 명 신도가 있었다.<sup>48)</sup> 그러나 감리교파는 장노교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思想風敎’에 좌우되는 세력은 아니었던 것이다.

1929년 1월 봉천에서 감리교회 대표 5명과 장노교파 대표 8명이 협의하여 만주에 있어서 두 교파의 선교구역을 분획하였는데 장춘지역은 감리교파의 전교구로, 간도지역은 장노교파의 전교구로 결정하고 2년 후에 재조정기로 하였지만 감리교파는 계속 간도지역에서 교세를 확대하였다. 한편, 1930년 12월 국내(조선)의 남·미 감리교파는 ‘기독교조선감리회’로 결성되고 「헌법」과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양주삼을 최고위원인 총리사로 선출하였다.

만주사변 이후, 즉 1931년 12월 용정에서 미감리교회 만주지방회와 남감리교회 간도지방회를 합쳐서 ‘기독교조선감리회만주선교년회’를 조직하고 선교, 교육, 농업 등 위원회를 내오고 회장에 양주삼, 서기에 이인선, 문성원, 장죽섭이 선출되었다. 감리교파는 1931년을 ‘진흥년’으로 삼고 이른바 ‘진흥운동’을 일으켜 각 곳에 여전도사와 특별전도대를 파견하여 교세 확대에 몰두하였다. 이듬해 12월 감리교 만주선교회 2차 년회가 용정에서 열렸는데, 선교사업에서 1인단을 조직하여 1인이

일년에 1인 이상 3인을 인도하며 특별전도대 조직활동 및 교회마다 개인 전도공과를 가르쳐서 완전한 교인이 될 때까지 인도할 것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전도를 위한 농촌사업으로 지방에서는 1년에 1차 이상 농사강습을 개최, 구역마다 농한기에 야학강좌를 열어 농사개량, 부업생산, 조합조직 등을 선전하며 3월 첫 주일을 농촌사업선전주일로 그 당일의 반액은 지방농촌사업에 충당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포교에 의해 1932년 감리교 교회 49개소, 예배당 29개소에 신도수는 4,657명이었는데<sup>49)</sup>, 그 중 간도에 교회 24개소, 신도수는 1,644명에 달하였다.<sup>50)</sup>

간도에서 감리교파 세력의 신속한 발전은 장노교파와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켰는 바, 1934년 10월 두 교파는 용정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의 치열한 논쟁으로 담판은 무산되고 각 파는 자유선교를하기로 결정하였지만 감리교파는 ‘순수한 신앙’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 교세는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1939년에 만주선교년회는 북만(11개 구역), 동만(9개 구역) 두 개 지방회로 나뉘었는데 총 49개소 교회에 신도수는 4,582명, 그 중에 간도에 27개소 교회에 신도수는 3,320명에 달하였다.<sup>51)</sup>

양주삼 총리사는 1939년 5월 기독교조선감리회 제7차 연합년회에서 ‘만주선교관리자’로 임명받은 후, 그 해 9월에 동만교회를 시찰하고 10월에 ‘특별위원장’의 신분으로 6명의 특별위원을 거느리고 일본에 가서 일본교회 총회에 참가하였는데 그 목적은 “일본제국 내에서 감리교회의 발전에 극이 유익한 방침을 연합하여 협상하는 것”<sup>52)</sup>라고

47) 玄圭煥, 앞의 책, p.540.

48) Ibid, p.81.

49) 玄圭煥, 앞의 책, p.549.

50) 李光緣, 앞의 글, p.432.

51) 玄圭煥, 앞의 책, p.549.

52) 魯德山, 「從圖門教會看偽滿時期的基督教朝鮮監理會」, 『延邊歷史研究』(1), 1986, p.143. 1939년에 설립된 ‘기독교조선감리교회도문제일예배당’은 대내적으로 ‘양주삼박사기념당’이라고 불렸다. 1978년에 교회당 건물을 허물 때 정방형 정초석 정면에 ‘梁柱三博士紀念堂’, 좌측 윗부분에 두줄로 ‘昭和十四年’, ‘主後一九三九年八月二十九日’이란 글자가 새겨진 定礎石과 함께 쇠상자를 발견, 그 안에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기독신문」 등 서적과 사진, 설계도가 있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날자가

밝혔다. 사실 「기독교조선감리회교리와 장정」의 부록 「헌법」에 의하면; “제28조, 일본신민은 안 녕 질서를 방해하지 않는 것과 신민의 의무를 위 배하지 않는 제한 내에 신교의 자유가 있으며”, “제31조, 본 장의 각 조례규칙은 전시 혹은 국사 변경의 정황에서도 모두 천황대권의 실행에 방해 가 없도록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보면 그들은 일제의 식민지배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친일적인 태도는 일제의 압력과 통제가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안전지대’로 만들 도록 하였고 또한 종교 자체의 보수성-정교밀착의 공간을 통해 자아 보존을 도모하는 종교의 보편 적인 속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볼 수 있다.

일제의 강압적인 시책에 따라 1940년 5월 19 일 만주 조선인 기독교 6개 교파의 대표들은 신 경에 모여 ‘조선기독교연맹’을 조직할데 관한 제1 차회의를 열고 연맹의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그 이듬해 8월 신경에서 제2차연맹회를 소집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여 “종래의 구미자유주의에 의 존하는 사상을 일소하고 공산주의를 배격하며 건 국정신에 좇아 종교보급의 지상을 다하여 국민으 로서의 책무를 유감없이 기함”<sup>53)</sup>이라고 밝힘으로 써 親滿(日)·反共의 길로 나갔다. 각 대표들은 이 회의에서 채택된 「신조」와 「헌장」에 대한 각 교파들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해 11월 24일에 신경 중앙교회에 결의를 지은 다음 ‘합동’결성을 이루었는데, 교구는 신경, 동만, 북만, 봉천, 안동 과 남만 등 6개 교구로 나누고 사무소를 신경에 설치하고 총회 산하에 총무국, 교육국, 교무국, 전 도국, 출판국, 세무국 등 6개 국을 두었고 봉천 서탑교회의 장노교 목사 정상인이 제1임 총회장 으로 선임되었다.

민주국에서 일제의 ‘황민화정책’이 고조됨에 따 라 재만 조선인의 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가 곧 교파 일체화 정책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종교 정책에 의해 설립된 ‘만주조 선인기독교’는 그 취지를 “만주건국정신을 잘 체 득하고 대동아신질서의 건설에 공헌하며 속죄구령 사업을 완성하여 교도보국과 황도실천에 둔다”<sup>54)</sup> 라고 함으로써 일제의 대동아침략전쟁의 정신적 도구로 변질하는 성격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 기도교인들은 반일민족독립운동에 참가하였을 뿐 만 아니라 반일사상과 민족의식을 소유한 목사들 도 있었는데 남만의 길림지구에서 활동하던 감리 교파의 손정도, 변성옥, 김의준 등은 그 대표적 인물들이었다. 예컨대 1935년 3월 길림시 강밀봉 관지촌에서 예배당과 길림신학교(1938년)를 꾸리 고 교장직을 맡았던 변성옥 목사는 “서양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동양정신으로 기독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민족 자주적 신앙을 주장하면서 초교파 전인 신교파를 만들었는데 그 예배당의 신도는 300명에 달하였다. 이에 대해 촉각을 세운 일제 는 1943년초에 변목사와 김의준목사를 ‘외국인특 무’라는 감투를 씌워 체포하였는데 김목사는 옥 중에서 단식투쟁을 벌리다가 옥사하였으며<sup>55)</sup>, 연 길시 장노교파의 신도 김응필은 일제의 ‘신사참 배’를 반대한 죄명으로 8년 도형을 받고 수감되었 다가 광복 후에 석방되었다.<sup>56)</sup> 만주국시기에 일부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반일적인 행동은 극히 소수 신도들에 국한되었을 뿐, 기독교가 일제의 강압에 의한 그 시대적 상황에서 자의든 혹은 타이든 일 제의 ‘황민화정책’에 부응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향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2) 천주교- 천주교는 일찍 1896년에 간도에서부

경술국치일과 같다는 점은 많은 사색을 던져준다.

53) 「조선민족발자취총서4-결전」, p.581.

54) Ibid, p.581

55) 원사회, 「30년대 길림시 조선족들의 신앙활동」, 「결전」, p.588. 1939년에 조선기독교교회파의 신도수는 길림을 중심으로 신경, 하얼빈, 아성, 목당강, 해림 등 곳에 교회 13개소, 신도는 1,135명 달하였다.(玄圭煥, 앞의 책, p.567.

56) 金澤 主編, 앞의 책, p.431.

터 전파되었으며 만주국시기에 이르러서도 간도지역은 역시 중심무대로 부상되었다. 천주교는 초기에 가족, 친우를 매체로 전파되면서 점차 교우촌(예컨대 화룡현 영암촌, 구세동, 연길현의 대교동, 팔도구 등)을 이루어 그 교세는 신속하게 확대되었는데 특히 외국선교사들이 ‘치외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천주교를 믿으면 지방정부의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동기에서 입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천주교는 전교의 수단으로 자선사업, 협동조합 및 학교 설립을 통해 교세를 확대함과 동시에 일부 천주교 신도들은 적극적으로 반일사상을 고취하면서 ‘의민단’과 같은 반일무장단체를 조직하여 항일민족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1920년 10월 일제의 탄압-‘간도토벌’과 공산주의 사상의 전파와 더불어 일어난 ‘반종교운동’ 및 조선총독부의 懷柔政策 의해 점차 반공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줄곧 ‘순수한 신앙’활동에 편향하면서 교세를 보존하기에 힘썼다. 1928년에 교황청의 인가를 받고 원산교구에서 연길교구가 분리되고 백화동이 교구장(1929년 2월 5일 임명됨)으로 될 때 간도 4현 및 그 부근 5개 현을 포함한 지역의 신도수는 모두 12,057명에 달하였다.<sup>57)</sup> 그 당시 연길교구의 상황과 反共의 태도를 다음의 글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새교구가 설립된 당시 정치상태와 및 시국은 변천해왔다. 간도 땅으로 이민은 몰려오고 교통, 상공업의 공장, 교육시설이 갑자기 늘어가는 동시에 비적(匪賊) 공산당(共産黨)들의 활약으로 농촌은 소란하게 되어 주민은 도시로 집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놀란만한 발전을 보여 촌촌에 공소, 야학, 강습소, 사립학교등이 세

워 졌던 것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촌에 공소가 반수 이상이 없어짐에 따라 국자가, 용정 등 대도시에는 교우수가 부적 늘어온다.<sup>58)</sup>

이러한 ‘변천’은 농촌을 주요 거점으로 하던 천주교 신도들의 활동 공간은 이주민의 증가와 더불어 ‘匪賊’과 ‘共産黨’(조공당을 말함)의 활약으로 인하여 점차 도시에 집중됨으로써 농촌의 공소, 야학, 강습소 및 사립학교가 감소되고 특이 ‘공소가 반수 이상’으로 줄었다는 것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백신부는 스위스 수녀를 초빙하여 수녀원(1931년)을 세워 여성 신도들의 신심생활을 하는 한편 교원, 간호인, 유치원보모 등의 역할을 하면서 전도사업을 시킴과 동시에 교우공동묘지를 관리하는 鄉徒會, 그리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 聖母會 노년회, 청년회, 부인회, 소년회, 소녀회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전교 사업의 방법으로 삼았다.

만주국이 건립된 후 1934년 4월 로마 교황청은 그때까지 중국과 동일한 포교구역을 갖고 있던 만주제국을 독립국으로 취급하고 별개로 다른 하나의 포교구로 인정하기 위해 법왕대리 칸스데 사교를 파견하여 4월 20일에 외교부대신 謝介石을 방문하고 만주국과 로마 교황청의 친선관계 촉진을 희망하였는데, 그 ‘성명서’에는 만주제국영내 혹은 기성국가와 교섭을 수행한다는 용어가 있어 만주국을 사실적으로 승인하였다. 8월 2일 로마법왕청 포교정청(布教政廳)으로부터 ‘親書’를 謝의교대신에게 교부하고 길림교구의 高德惠를 ‘宗座代表’로 임명하였다. 이 ‘친서’에서 “만주국 내에 있어서 카톨릭교의 포교전도에 관해 금후 정식으로 만주국법을 遵行하며 또한 만주국의 문명교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종교적으로 만주국을 승인한다”<sup>59)</sup>는 요지가 담겨있었다. 만주국에 있어

57) 韓典烈, 「延吉教區 天主教會略史」, 『카톨릭青年』 41, 1936년(제10호), p.14.

58) Ibid, p.821.

59) 本捨三 著, 『大滿洲建國史』 奉天: 吐風書房, 康德9年, p.445-446

서 로마 교황청의 權威를 代身하는 ‘종좌대표’는 민주국의 천주교도들에게 민주제국을 ‘사랑’하고 제국정부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연길교구의 白化東주교는 신부들에게 이 정신을 전달함과 동시에 특히 각 교회 학교에 ‘종좌대표’의 지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sup>60)</sup>

1934년 9월에 연길에 ‘十字聖架修道院’을 설립하고 백주교가 원장을 겸임하였는데 30여명 신부 중에 조선인 신부는 2명이었고 20여 명의 수사는 모두 외국인이었다.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된 백주교는 인장으로 ‘승리의 십자가’를 정하였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세속을 익히고 마귀를 치고 사람을 구원해내신 것 같이 정국이 불안정하고 주의사상의 풍파가 일며 온갖 정신적 또는 물질적 난관이 중첩한 이 연길지방 천주교회로 결국은 이 십자의 개선가를 높이 부를 때가 있을 것”<sup>61)</sup>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민주국 초기 일제가 간도를 ‘공산운동의 책원지’로 지목하고 대토벌을 감행할 때, 천주교회는 이 기회를 교세를 확장하는 호기로 삼았다. 예컨대 1933년 4월 일제가 훈춘 일대의 ‘共匪’<sup>62)</sup>를 토벌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연길천주교회의 정목덕신부는 훈춘에서 교당, 학교, 병원을 건립하였고 또한 왕청현 하마탕, 화룡현 토성자, 달라자 등 곳에서 ‘구제’의 이름으로 난민들에게 전도하면서 교세를 확장하였는데 이것은 전도의 목적과 더불어 백교주의 반공 입장과는 무관하지 않았다. 시국의 험난은 도시 본당교회에도 큰 위협을 주었으니 1935년 3월에 차투구 대령동(茶條

溝大領洞) 성당은 공산당의 방화로 전소되어 교우들이 흩어졌으며 그보다 먼저 대동령 근처 공소 강당인 학서동(鶴樓洞) 성모당도 공산당들에게 소진<sup>63)</sup>된 것을 보면 천주교와 ‘공비’의 관계는 긴장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막에는 일제의 작간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예컨대 1932년 가을에 연길교구 부교구장인 백교범(독일인)신부가 일본군 병사에게 피살되었을 때 일제군측은 ‘공산당의 작간’<sup>64)</sup>이라고 소문을 퍼드리기도 했다.

그리고 수녀원은 용정, 명월구, 훈춘, 연길에 지방수녀지원을 두었는데 1936년에 조선인 수녀 許願을 비롯한 4명 외에 20여 명 지원자가 있었다.<sup>65)</sup> 1936년 3월에 포교사업의 하나로 출판부를 설립하고 월간잡지 「기틀릭小年」을 창간하였는데 당시 조선 3대잡지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혔다. 그리고 이 시기 오삭조(「칼톨릭소년」잡지 제2임 편집)는 라틴어원본 「遵主聖範」을 한글로 번역하여 조선천주교계의 효시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기타 교파의 종교적 영향에 비해 천주교의 교세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발전이 있었다. 통계에 의하면 1934년에 연길교구는 14개 교회당, 84개 공소에 신도수는 11,258명이었고 그리고 남만과 북만의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은 주로 도시에 많이 분포되었는데 봉천, 무순, 돈화, 액목, 영안, 목당강 등 도시의 2,700여 명 신도를 합하면 모두 1,4000여 명에 달하였다.<sup>66)</sup> 1937년 연길감목구는 종좌대목구로 승격되고 백교주는 대목구 교주로 임명되었다.

60) 金澤 主編, 앞의 책, p.424.

61) 韓興烈, 앞의 글, p.21.

62) 민주국시기 일제는 ‘匪賊’이란 개념에 대해 그들의 來歷 및 정치적 경향성에 따라 土匪, 兵匪, 思想匪, 宗教匪, 政治匪 등 5 종류로 대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宗教匪’는 한족들의 ‘홍창회’ ‘대도회’와 같은 광열적인 신앙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共匪’는 思想匪에 속하는 反滿·反日 세력을 지칭한 것이다.(本捨三 著, 「大滿洲建國史」, 奉天: 吐風書房, 康德9年, pp.239-240.)

63) 韓興烈, 앞의 글, p.17.

64) 김광희, 「연변천주교의 연혁과 오늘의 상황」, 「연변문사자료」 제8집 종교자료전집, 1997, p.24.

65) 韓興烈, 앞의 글, p.16.

66) Ibid, 앞의 글, p.20. 玄圭煥, 앞의 책, p.560. 이 숫자는 연길교구에 포함된 3천 여명의 한족 신도수를 감하면 당시 조선인의 신도수는 약 만명에 달한다.(김광희, 「연변천주교의 연혁과 오늘의 상황」, 「연변문사자료」 제8집 종교자료전집, 1997, p.14.

그리고 만주국시기 천주교의 포교 수단의 한 방법으로 일으킨 것이 바로 ‘카톨릭운동’-즉 사회, 가정, 개인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발전과 옹호를 위해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평신도들이 참여하여 모든 공동체운동을 카톨릭화<sup>67)</sup>하여 ‘농촌부락’을 건설하는 것이다. 예컨대 1927년에 수전을 풀기 위해 북만의 해룡현 북해진 선목촌(하얼빈에서 약 5백리 떨어진 곳)에 이주한 조선인들은 매 5戶를 한組로 묶어 자치적인 농민조합제를 실시하였는데, 길림교구에 속하는 張方濟신부(한족)의 노력과 한족들의 후원으로 ‘카톨릭부락’을 조직하고 경찰, 교육, 전도, 생산, 경제 등 6부를 설치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2천 여명<sup>68)</sup>의 신도들로 구성된 신앙공동체로 운영되어 북만의 ‘모범농촌’<sup>69)</sup>이란 칭호를 받을 정도였다. 이것은 종교적인 힘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을 자각적으로 하나의 신앙으로 선택하게 하는 布教之策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종교와 경제의 합일체로 만들어진 농장 경영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후에 영, 미 등 나라의 외국인 선교사들은 모두 만주국에서 구축되었지만 천주교의 독일 신부들은 ‘3국 동맹국’의 국민으로 계속 만주국에 남아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일제의 종교 정책은 완전히 ‘신교자유’라는 허구를 벗어난 지고 성경에서도 어떤 장절은 해설을 금지시켰고 찬송가에서도 어떤 노래는 부르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도들에게 ‘신사찬배’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천주교에서는 1942년 초에 로마 교황청의 ‘告示’에 의하여 교도들의 ‘신사차배’가 허용되었고 ‘성전’-침략 전쟁을 위한 ‘헌납운동’이 일

어났다. 이때 일제는 기독교예배당의 종까지 다 뜯어갔지만 천주교당의 종은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았다. 이에 일부 천주교 상층인사들은 감지덕지하여 일제의 성전을 선양하기도 했고 유신과 무신은 勢不兩立이라고 하면서 反共宣傳을 고취하기도 했다.<sup>70)</sup> 1942년 12월 연길교구의 백화동주교는 동맹 3국의 ‘반공협정’정신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각 본당의 司鐸들에게 “대동아성전의 승리를 위해 기도를 드리자”<sup>71)</sup>는 諭示를 발송함과 동시에 전체 교구의 본당신부들을 교구에 집중하여 ‘성전승리’의 대미사를 드렸으며 각 본당신부들은 그 후부터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주교의 유시를 집행하였다.

### 3. 신종교-대종교, 청림교, 증산교, 천도교

위에서 이미 서술하다시피 재만 조선인들은 외래 종교(천주교, 기독교)와 전통 종교(유교, 불교)를 제외하고도 무속을 근간으로 하는 민간신앙의 바탕 위에 유·불·선 3교의 접합으로 생성된 고유 민족적 종교인 신종교를 신앙하고 있었다. 佛敎는 ‘極樂世界’, 基督教은 ‘天堂’, 儒敎 ‘現世의 倫理’를 강조하지만 新宗敎는 흔히 ‘地上天國·後天仙境’이라는 현실주의에 입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유토피아 세계는 모든 사회적 差等化와 不平等한 身分의 制約이 철폐되어 모든 사람들이 貧富·貴賤·嫡庶·男女가 差別待遇를 받지 아니하며 人間生來의 尊嚴한 가치를 바탕으로 萬民平等·事人如天의 理想社會를 建設함으로써 이루어진다”<sup>72)</sup>는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67) 金鐘弼, 「滿洲國과 가톨릭農村建設의 急務」, 『가톨릭靑年』, 1934년 11월 제10호, p.31.

68) 玉수산나, 「滿洲善牧村의 回顧」, 『가톨릭靑年』, 1934(11월 제10호), p.35.

69) 『黑龍江省志第56卷 民族誌』, 黑龍江人民出版社, 1991, p.107.

70) 김광희, 앞의 글, p.24.

71) Ibid, p.24. 1945년 8월 광복될 때 연길교구의 독일신부는 모두 18명, 그 중 10명은 1948년에 두 차례를 걸쳐 귀국하였는데 백화동주교도 이때에 귀국하였고 그 후 1952년에 모두 귀국하였다.

72) 韓昇助 著, 『韓國의 政治思想: 과거·현재·미래』, 일남출판사, 1989, p.124.

한 특히 만주에서 전파된 대부분 신종교는 일반적으로 반일 색채가 농후하였기 때문에 재만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흡인력을 지닐 수 있었다.

재만 조선인들의 신종교 계보를 보면 그 절대 대부분이 조선 국내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본부는 조선 국내에 있었다. 하지만 1910년 8월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무단통치에 의한 종교 탄압이 심해짐에 따라 일부 반일 색채가 짙은 대종교, 원종교와 같은 신종교는 만주에 본부를 옮겨 동포 사회를 기반으로 그 교맥을 유지하면서 항일민족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반일 종교’의 성격을 진하게 갖고 있었으며 시천교, 제우교는 ‘만주보민회’<sup>73)</sup>와 같은 주구 단체를 조직하여 반민족적인 죄악을 저지르면서 ‘친일 종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천도교, 청림교는 초기에 반일 기치를 들었지만 일제의 탄압(‘간도출병’)에 겁을 먹고 점차 반일 기치를 포기하고 ‘순수한 종교’ 활동으로 전향되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 일제의 패망 기운이 감돌고 있을 때 대종교, 청림교, 증산교는 일제의 ‘황민화정책’을 반대하거나 혹은 신앙적으로 반일 태도를 보여주었거나 혹은 반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결국 일제의 탄압에 의해 점차 소실되거나 또는 광복 후에 시국의 급변으로 말미암아 본부를 다시 국내로 옮기게 된다. 이 글에서 편폭의 제한으로 만주국시기에 일제에 의해 탄압을 받았던 대종교의 ‘임오교변’, 청림교의 ‘영막전사건’ 그리고 ‘증산교사건’ 및 중공계열의 항일연군에서 ‘고려홍군’으로 불리던 제2군 제6사의 ‘민족통일전선정책’에 적극

적으로 호응했던 천도교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임오교변’-대종교는 일찍 1914년에 북간도로 본부를 옮기고 ‘중광단’, ‘북로군정서’ 및 ‘사관연성소’와 같은 반일단체와 무관학교를 조직하고 대일혈전에서 중역을 담당하였고 또한 그 교세가 날로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1925년 「미쯔야협정」의 ‘부대조건’에서 “대종교는 反日軍團의 母體로서 宗教를 가장한 抗日團體이니 중국에서 영토책임 상 이를 해산시켜야 한다”<sup>74)</sup>는 이유로 ‘포교금지령’을 내려짐으로써 큰 타격을 받았다. 대종교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일제는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

대종교는 유세복이 東道司敎로서 내입하여 寧고탐에 교당을 세우고 포교에 종사함으로써 일시에 신도를 얻었지만 시대의 추세에 따라 점차 衰滅에 기울리면서, 또한 작년에 寧安현당국은 종교를 籍口로 陰으로 衆人을 모아 정치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그 포교를 엄금하였기 때문에, 그 후 유세복은 衞門에 寓居하면서 窮迫한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리하여 신도 박찬익에 의해 그 해금 교섭을 시도하였지만 얻지 못했고, 鄭潤 등은 기념관 건설이란 이름으로 지방으로부터 기부금을 요구하여 그 수입으로 농사경영을 위하고 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sup>75)</sup>

이러한 기록은 만주사변 전에 대종교 제3대 교

73) ‘만주보민회’는 1920년 7월 16일 남만의 일진회 잔당들인 제우교 신도들을 중심으로 이인수(李演秀), 백형린(白衡麟), 최정규(崔鼎圭) 등이 봉천 일본영사관의 지령에 따라 조직되었는데 총지부를 홍경현에 설치(이듬해 봉천에 옮김)하고 통화, 환인, 유하, 관전, 증안, 립강, 장백 등 현에 지부를 통화에는 ‘보민회본부출장소’를 두었던 완전한 친일단체로서 흔히 ‘보민회’ 혹은 ‘보민단’이라 불렀는데 그 회원은 약 5만 명에 달하였다.(金正柱編, 『朝鮮統治史料』 第二卷, 1970, p.447. 김양, 『암록강류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료녕민족출판사, 2001, p.339.)

74) 高維鈞, 『雙方商定取締韓人辦法綱要:取締韓人辦法施行細則』, 『中國現代史料叢書』 第2輯, (臺北:文星書店), 1962, pp.77~79.

75) 朝鮮總督府警務局, 『吉林省東部地方의 狀況』 京城:大和商會印刷所, 昭和3年, pp.416-417.

주 윤세복을 비롯한 대종교인들이 일제의 간계에 의해 중국 지방당국으로부터 압제를 받음으로써 북간도에서 북만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다음의 역경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것은 일제의 세력이 북간도에 많이 집중됨에 따라 대종교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대종교는 북만에서 본부를 몇 차례 이전하면서 주로 교리 연구와 더불어 지하 상태에서 교단조직을 계속 유지하였는데 1928년의 통계에 의하면 東二道區內의 념안, 해림, 목당강, 밀산, 목릉, 동녕 등 현에 8개 교당에 신도수는 714명밖에 안되었다.<sup>76)</sup>

만주국이 건립된 후 시세의 급변은 종교정책에서도 표현되었는데 그것은 소위 ‘종교의 신앙 자유’라는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세에 맞추어 1934년에 대종교의 제3세 교주 윤세복은 ‘國難亡이나 道可存이라’는 神兄 羅喆의 유지를 奉承하기 위해, 또한 ‘不如意하면 나의 一身을 희생하여 先宗師의 付託하신 大恩을 갚겠노라’<sup>77)</sup>는 비장한 결심을 다지면서 밀산부터 영안에 이르기까지 5개 시교당을 신설함으로써 포교를 부활시켰다.<sup>78)</sup> 그는 포교 선도의 승인을 획득하려는 일념으로 그 이듬해 하얼빈에서 친일파인 김응두와 박해관의 주선으로 일본관동군 특무기관, 하얼빈일본총영사관, 조선총독부특파원에게 「施教權認可申請書」를 제출하여 ‘순수한 종교 활동을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포교 허가를 받는데 성공한 다음 그해 3월에 하얼빈에 ‘대종교선도회’를 설치하고 그 이듬해에 념안현 동경성에 본부를 옮겼다. 대종교가 이와 같이 일제와 타협

하여 대종교의 교세를 재기시키려는 방략은 대종교 정신에 위배되는 ‘실책’이었고 또한 일제가 대종교의 내막을 탐지하기 위한 위장술책이었다<sup>79)</sup>.

대종교는 만주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포교권의 인정과 더불어 하얼빈선도회 외에도 8개 시교당과 대종학원의 설치 및 교적간행에 대한 승인(1939년)까지 받고 대종교의 포교조직과 포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교세는 신속히 확대되어 그 신도는 천여 명에 달하였다.<sup>80)</sup> 1937년 4월 대종교는 牧丹江省公署의 인허를 얻어 ‘天真殿’의 신축준비, 교적간행 및 대종학원을 신설(학생 50~60명)하여 육영교육에도 힘썼다. 대종교의 이러한 교세 발전은 일제의 ‘치안’에 불안한 요소를 간주되었다.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촉탄인 친일주구 조병헌을 대종교 내부에 잠입시켜 그 내막과 간부들의 언동 등을 감시·탐지하여 정기적으로 일본특무기관에 보고토록 하였다.

1942년 9월, 조선어학회의 대종교신도李克魯가 윤세복에게 보내는 편지에 동봉한 「널리 퍼는 말」이라는 글이 우편물과 함께 발견되었는데, 일제는 이 글을 일문으로 번역할 때 『조선독립선언서』<sup>81)</sup>로 단정하고 그 해 11월 9일 일제는 윤세복 이하 25명의 간부들을 만주와 조선 국내에서 일시에 검거·체포하였다. 이른바 ‘임오교변’이었다. 일제는 대종교를 ‘국체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치안유지법위반’이란 죄명으로 윤세복 이하 21명에게 무기형 또는 유기형에 언도하였다. 그 중 10명은 옥사하거나 또는 악형에 시달리다가 사망되었다. 이른바 ‘壬午十

76) Ibid, pp.416-417.

77) 大宗教總本司, 『大宗教重光六十年史』, p.444.

78) Ibid, p.445.

79) 朴永錫, 『日帝下 獨立運動史研究: 滿洲露領地域을 中心으로』, 一潮閣, 1984, p.268.

80) 大宗教總本司, 『壬午十賢實錄』, p.38. 위만당안자료에 의하면 1931년부터 1935년 사이에 북만의 3개 성(목단강성, 삼강성, 빈강성)에 대종교 시교당은 20개(대종학원 1소), 신도는 9,982명에 달하였다. (『黑龍江省民族誌』 第56卷, 앞의 책, p.106.

81) 사실, 「널리퍼는 말」이라는 글 속에 담긴 내용을 보면 대종교의 부활, 천진전의 신축 및 대종학원의 건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적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는 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도 큰 죄가 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생략)… 일어나라, 움직이라! 한배검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어구들을 보면 대종교인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경종을 울려주는 요소도 내포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경은 이 글의 “일어나라, 움직이라!”는 구절을 일어로 번역할 때 “蜂起하자, 暴動하자!”로 위역하고 ‘조선독립선언’으로 표제를 달았다. (大宗教總本司, 『大宗教重光六十年史』, pp.458-459.)

賢’이었다. 1945년 8월 12일에 쓰련군의 목단강 진주에 의해 액하감옥에서 ‘광복’을 맞은 윤세복 등은 다시 동경성에 돌아와서 대종교총본사의 간판을 걸고 대종학원의 회복, 한글강연회 등을 통해 계속 포교활동을 하다가 시세의 변화에 따라 그 이듬해 1월에 귀국함으로써 만주에서의 대종교 활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2) ‘청림교 사건’-청림교는 동학의 교주 최제우의 문하인 南正이 「鄭鑑錄」과 민간신앙을 혼합하여 1913년에 교단을 창설하였는데 그의 호가 ‘靑林’이므로 그 이름에 따라 청림교라 불리웠다. 초기에 그는 계룡산 정도설을 유포하다가 일제의 탄압을 받음으로써 교단은 크게 쇠락되었다. 교주 남정이 죽은 후 1916년에 韓秉洙, 泰杜燮, 金相高, 李玉行 등은 다시 청림교를 재건할 때 일제의 탄압을 회피하기 위해 “내외 선인의 불은사상을 교정한다”<sup>82)</sup>는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친일적인 성격을 보이면서 한 때는 그 신도가 만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청림교는 미신 사상과 더불어 정도설을 계속 전파함으로써 일제당국에 의해 30년대 초에 탄압을 받고 기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만주에서의 청림교는 일찍 1910년대에 립감석에 의해 북간도의 용정촌, 화룡현 토성자 등 곳에서 전파되었다. 1919년 3월에 청림교 신도들은 용정의 ‘3·13’만세운동에 참가하였고 또한 임창세, 신평 등은 ‘야단’을 조직하고 북로군정서와 기맥을 같이 하면서 항일민족독립무장투쟁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북간도 조선인들의 반일정서를 무마시키기 위해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韓晤를 교주로, 金夢弼을 보종관장으로, 韓載贊을 총부장으로 임명

하고 용정에 본부를 두고 각지에 골간들을 파견하여 “청림교는 일제의 양해를 얻어 포교하므로 청림교의 教馮을 소지하면 절대 안전할 것”<sup>83)</sup>이라는 선전으로 교도들을 귀순시키고 이른바 “性靈養成, 經濟發展, 人格向上, 風俗改良, 生産發展”<sup>84)</sup>을 주장하면서 친일적인 개량주의로 나아갔다. 특히 일제의 ‘간도출병’시에 이들은 “일군이 계속 토벌할 것이니 오직 청림교에 입교하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선전에 의해 일부 천도교, 기독교 신도들이 입교함으로써 교세는 급증하였다. 그러나 일군이 철폐한 후에 피박에 혹은 보신책으로 입교한 다른 교파의 신도들이 육속 청림교를 탈퇴함으로써 청림교의 교세는 크게 감소되었고 또한 내부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다.

청림교의 친일적인 행위에 은연히 혐오감과 반감을 갖고 있던 임창세를 비롯한 12명은 공교회와 연합하여 대성유교를 건립하고 친중적인 입장에서 공맹지도를 숭상하면서 대성중학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1925년에 임창세 등은 대성유교를 이탈하고 다시 청림교를 회복함과 동시에 단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백두산에 올라 단군제를 지내면서 다음과 같은 주문을 외우면서 ‘멸왜기도’를 드려었다.

영명하신 조선개국신왕 단군님께서 도탄 속에 헤매이는 망국노 삼천만 백의동포를 가엾이 여기시어 불공대천의 원수 일제를 멸망시키고 정천자가 조선의 국왕으로 하루속히 군림하도록 도와줄 것을 기원하나이다...<sup>85)</sup>

만주국이 건립된 후에도 청림교는 민간신앙의 형식을 빌어 ‘북두칠성제’를 지내면서 비밀리에

82) 金德梲, 『韓國宗教史』(韓國精神史大系第二集), 白岩社, 1978년(재판), p.481.

83) 姜德相, 『現代史資料』 28, 東京:みすず書房, 1970, pp.387-389.

84) libd.

85) 박장성, 「간도에서 발생한 반일민족 운동」, 『연변문사자료』 제8집, 1997, p.35.

계속 ‘멸왜기도’를 올리었다. 1935년에 임창세는 자금을 모아 용정동산기슭에 영막전을 짓고 전각에는 일제의 눈을 가리기 위해 첫줄에 일본개국신 천조대신과 고종황제의 초상 그리고 공자의 초상 및 조선 역대의 개국 국왕과 애국충신들의 비석을 모시고 단군제를 지내면서 일제의 패망과 민족의 구원을 기도하였다. 1942년에 청림교도들은 용정토성보에 중국의 3황5제와 주무왕의 청석비를 세움으로써 청림교는 일·朝·중 3국의 개국 왕들을 모두 숭상하는 것을 표방하면서 “조선에도 3황5제와 같은 성인들이 나타나 자기 나라를 다스려주기<sup>86)</sup>를 바라는 백일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이처럼 청림교는 외적으로 3국의 개국 시조를 모두 신앙하는 ‘동방의 종교’로 표현시키면서 내실에는 반일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3년이후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거둬 패배하면서 이른바 ‘성전’의 최후 패망의 징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을 때, 교주 임창세는 교도들과 함께 ‘일제필패’의 기도를 10여 차나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제의 근로봉사, 량식출하, 강제징병 등 만행을 폭로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왜놈과 대항하여 싸울 것”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기도’에 호응한 지원자는 3천명에 달하였다.<sup>87)</sup> 당시 반일 사상을 갖고 있던 천도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계의 신도들도 분분히 청림교에 가입하였다. 청림교 교도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제의 촉각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일제는 청림교를 가장 견인한 민족독립단체로 보고 그 주요 간부들을 특별 요찰인으로 삼고 감시를 계속 하는 한편, 그 활동을 인가하면서 내막을 알기 위해 특무를 파견하여 내부에 잠입시켜 정보를

수집하게 하였다.

1943년에 간도성 지방보안국 용정특첩반장 中島勉은 청림교도들의 반일활동에 대한 선색을 간도성 보안국장에게 보고하였는데, 보안국에서는 5만원의 경비를 지출하여 정보를 장악하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 두도구의 용정헌병분견대 伍長忠源은 협화회 회장인 韓秉洙를 통해 청림교의 ‘불온활동’에 대한 정보를 장악하고 그로 하여금 한 달에 한번씩 간도헌병대 본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1944년 12월 9일 간도성경무청특무과에서 회의를 열고 ‘검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였는데 일제는 이 사건의 중대성과 정보의 누설을 고려하여 중국인과 조선인 경찰은 참가시키지 않았다. 그 이튿날 청림교도들이 ‘禰天’의 이름으로 용정토성보에서 반일 기도를 갖는다는 정보를 접한 그날 저녁 10시에 제1차 검거를 각 곳에서 일시에 시작하였다. 일제는 룡정, 화룡현 두도구, 연길시 구역에서 모두 약 80여 명의 신도들이 체포되었다. 제2차 검거는 1945년 5월 10일에 화룡현의 두도, 동성, 광성, 이도구, 서성과 덕화 등 곳에서 청림교도 40여명이 체포되었다.<sup>88)</sup> 이들 중에 50여 명이 도형(임창세는 무기형, 장기형에 임박형 20년, 박두학 15년, 최진형 10년, 골간은 단기형으로 7년에서 3년까지)을 받고 길림감옥 혹은 연길감옥에 압송되었는데 그 중에서 감옥에서 학살되거나 또는 혹형으로 옥사하거나 또는 석방된 후에 인츰 사망된 사람은 20여 명에 달한다.<sup>89)</sup> 교주 임창세는 사형언도를 받았으나 광복 후에 석방되어 나온 후에 석비를 세우고 청림교를 회복하는 활동을 하다가 그 이듬해에 귀국함으로써 청림교는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86) Ibid, p.38.

87) Ibid, p.39. 박장성 노인의 회억에 따르면 그 때 그가 직접 부친(박두학, 청림교 신도임)의 부탁을 받고 이 기도회에 응한 사람들의 명부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88) Ibid, p.41. ‘청림교 사건’의 제1차 검거의 당사자인 박장성노인의 회억에 의하면 제2차 검거에서 체포된 40여 명은 두도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의 훈계를 받고 모두 석방되었다고 한다.

89) 용정시공안국서류 1954년 예심 제45호 「靑林教興大成儒教組織統計表」 그리고 유가족들의 증언에 의해 지금까지 실명을 파악한 사망자는 16명, 그 외는 아직 해명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임오교변’에서 사망된 대종교인 보다 더 많았다.

(3) ‘증산교 사건’-증산교는 교주 姜一淳이 동학의 교리와 전통적인 민속신앙인 神敎를 가미하여 창립한 신교계의 교단으로서 그의 호가 ‘甌山’이므로 흔히 증산교라고 부르며 또는 呪文에 흠치니 태을이니 하는 용어가 있어서 ‘吁哆敎’, ‘太乙敎’라고도 불렀다. 1919년에 교주 姜一淳이 죽은 후에 이 교단은 車京石의 ‘보천교’, 趙哲濟의 ‘무국대도교’, 金亨烈의 ‘미륵불교’ 등 10개 파로 분리되었다. 1924년에 보천교에 가입했던 車京大, 金彦洙가 그 별파로 증산교를 창설하고 주로 ‘교주등극설’을 내세웠다.

만주사변 직후<sup>90)</sup>에 평안도 신의주의 崔允杰(호는 龍岳)은 백 여호의 증산교도를 이끌고 遼寧省康平縣遼陽窩堡에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들어왔다가 얼마 후에 일본개척단이 이 곳에 들어오면서 다시 吉林省柳河縣大甸子村으로 옮기었다. 그들은 자금을 모아 ‘개척조합’을 조직하고 수전을 풀었는데 친척 및 종교 관계를 통해 조선에서 40여 호가 와서 모두 130여 호에 달하였다. 초기에 증산교는 ‘甌山神靈’을 모시다가 후에 ‘天地日月聖神’을 신봉하였는데 그 교단은 ‘中央’과 ‘八院’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기 ‘致誠祭’를 지내는 장소가 있었고 계율이 엄격하고 등급이 명확하였다. ‘중앙’의 교주는 신도들에게 ‘神明’을 주는 것과 각 원의 ‘院師’ ‘繼師’를 임명하는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평시에는 서로 ‘先生’으로 칭하면서 화목하게 지냈다. 그리고 그들은 자체의

독창적인 교규-‘伍條準則’<sup>91)</sup>와 교의를 갖고 있었다.

일제의 ‘황민화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창씨개명, 신사참배, 근로봉사가 강요될 때 교인들은 모두 일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설립한 ‘국민우급학교’(소학교)는 일제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시종 일어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증산교도들은 ‘중앙’의 ‘致誠’場所 대문위에 그려놓은 八卦圖는 ‘태극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민족적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망국의 비운을 겪던 증산교도들이 일본(어)에 대한 거부, 민족 국가에 대한 希求心을 종교적 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제는 증산교를 ‘통제’하고 내막을 파악하기 위해 ‘교원’의 신분으로 密探을 잠입시켜 감시하도록 하였다. 1942년 겨울 어느날 새벽, 수백 명의 군경들이 대전자촌을 포위하고 교주를 포함한 28명 교도들을 체포하였는데, 그 중 2명은 혹형에 의해 구치소에서 사망되고 나머지 교도들은 “중앙을 별도로 세우고 八院을 설립하여 태극기를 그리고 일본을 반대한다”<sup>92)</sup>는 죄명으로 도형에 언도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本溪 세멘트공장에서 노역을 하였고 일부 노약자는 奉天 제1감옥에 투옥되었다. 광복 후에 교주를 포함한 교도들이 석방되어 다시 종교 활동을 회복하였지만 70여 호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세는 미진한 상태였다.<sup>93)</sup>

90) 증산교도들이 만주에 이주한 시간은 1931년(혹은 1932년)에 요양현 와보에 이주하고 몇 년 후인 1939년에 유하현 대전자로 옮기었다.(朴炳益, 「柳河朝鮮族甌山敎」 金澤, 앞의 책, 457.) 필자가 집록한 자료에 의하면 20년대에 보천교는 이미 남만지역에서 종교 활동을 하였는데, 유하현에 들어온 증산교와 어떤 계보적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들이 초기에 ‘증신신령’-교주 강일순의 畫像을 모신 것을 보면 보천교와 연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91) 증산교의 ‘5조준칙’은 “사람을 욕하지 않으며, 사람을 때리지 않으며,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도박을 하지 않으며, 好色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도교의 ‘老君五戒’와 불교의 ‘五戒’와 비슷하다.

92) 朴炳益, 앞의 글, p.459.

93) 광복 후, 1947년 총장 朴乙海를 비롯한 일부 교도들은 ‘이홍광지대’에 참가하였지만, 崔允杰(教主), 許銀善(助合長), 朴宗律(巡使, 憲兵補)는 ‘토지개혁’ 때 지주로 회복되어 맞아죽었고 17명 골간 교도들이 투쟁을 받는데 그 후에 증산교는 완전히 종적을 감추게 되었다.

(4) 천도교와 ‘해산사건’-천도교는 1905년 12월에 손병희는 李容九의 ‘일진회’를 제명하고 동학의 正統으로 그 이름을 천도교라고 불렀다. 일·로전쟁 이후 만주 진출에 문을 열었던 일제는 1907년 8월 용정촌에 ‘통감부간도임시파출소’를 설립하고 ‘한인 보호’와 ‘영토 미해결’을 구실로 간도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을 때 ‘일진회’는 일제의 유혹에 의해 이른바 ‘간도 이주계획’<sup>94)</sup>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만과 간도에 일진회의 세력이 컸다. 초기 천도교와 ‘일진회’의 행적은 서울에서 천도교가 일진회(시천교)와 분리됨에 따라 1909년 8월에 북간도의 ‘일진회’도 시천교와 천도교로 분리되었는데 천도교는 金德雲, 黃熙龍을 수령으로 서울 천도교중앙총부의 관할하에 있으면서 ‘韓明義塾’을 설립하고 “국권회복은 천도교의 興隆에 있다”<sup>95)</sup>면서 타종교와 협력하여 배일 사상을 선전하면서 교세를 확대하였다. 남만에는 집안, 환인, 장백 등 곳에 신도들이 집중되었는데 모두 국내 교구에 속해 있었다

20년대에 천도교는 신·구 양파로 분리되었는데 신파는 ‘천도교청년회’를 조직하고 ‘대동이주의’를 선전하면서 ‘節制’운동과 ‘理想村’ 건설을 주장하면서 점차 비종교적인 사회개량주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sup>96)</sup> 특히 사회·공산주의 사상이 전파되고 ‘반종교운동’이 흥기됨에 따라 천도교에서 세운 용정의 동흥중학교는 사회주의운동의 기지로 변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부 천도교인들은 현대적 철학으로 교의를 해석함과 동시에 일부 진보적인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교세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통계에 의하면 1925년

북간도에 11개 교회, 신도수는 3,386명에 달하였다.<sup>97)</sup>

만주국이 건립된 후, 천도교는 북만지역으로 교세를 확장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1932년 3월에서 8월 사이에 하얼빈천도교회, 신안진의 천도교영안종리원, 동경성의 천도교동경성전도실 및 도문에 천도교전도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천도교의 교회 수는 늘었지만 신도수는 감소되었는데, 1934년에 천도교는 만주에 교회 16개소, 신도수는 1,816명이었고 1936년에는 교회 9개소, 신도수는 2,039명<sup>98)</sup>이었다. 간도에는 3개 교회에 신도수는 290명밖에 안되었다. 이리하여 천도교도들의 공간적 활동 중심은 간도지역에서 점차 남만지역으로 이전되었다.

만주국시기 천도교도들의 활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1936년 5월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제3사(이 부대는 1936년 7월에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제6사로 편성, 사장은 김일성)가 동만(간도)의 항일유격근거지를 떠나 장백현을 중심으로 하는 백두산항일유격근거지를 창설하면서 코민테른 제7차 회의의 결의에 따라 재만 조선인의 항일통일전선체인 ‘재만한인조국광복회’(‘조국광복회’의 총칭)를 조직할 때, 천도교도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보여준 것이었다. ‘조국광복회’는 「선언」에서 ‘재만 한인의 진실한 자치와 조국광복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국내외 전동포에게 “전민족의 계급, 성별, 지위, 당파, 연령, 종교 등 차별을 불문하고 백의동포는 반드시 일치단결 꺾기하여 仇敵인 왜놈들과 싸워 조국을 광복시킬 것”<sup>99)</sup>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과거 반종교적 또는 배타적인 입장을 바꾸어 종교-특히 5만의 신도를 가진 천도교를 포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94) 「일한합방비사」(西尾陽太郎, 『李容九小傳』, p.218); 任鐘國 著, 『日帝侵略과 親日派』 서울:靑史, 1982, p.336.

95) 玄圭煥, 앞의 책, p.571.

96) 沈茹秋, 앞의 책, p.61.

97) 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課, 『滿洲及西比利亞地方に於ける朝鮮人事情』 昭和2年, p.89.

98) 玄圭煥, 앞의 책, p.520.

99) 「재만조선인조국광복회선언」(이재화 지음, 『한국근현대사 민족해방운동사-항일무장투쟁사편』, 백산서당, 1988, p.548.)

하고 전략적 성격의 통일전선을 촉구한 것이었다.

장백현의 종리원장 이진화는 천도교의 반일전통을 발휘하여 교도들이 항일연군에 참가하는 것을 고무하였다. 제6사 사장 김일성은 천도교 청년당 당원인 李昌善과 이진화의 알선으로 평안남도의 갑산, 심수, 풍산 3군의 종리원을 감독하는 천도교 도정 박인진을 만나 ‘조국광복회’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朴寅鑑은 그의 제의를 접수하고 ‘조국광복회’에 가입하였으며 그해 12월 천도교 地日祭에 참석하기 위해 경성에 가서 玄法師인 崔麟에게 제휴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sup>100)</sup> 그와 관계를 단절하고 천도교도들을 인도하여 항일연군의 항일투쟁을 성원하였다. 당시 ‘조국광복회’의 기관지 「3·1월간」에는 “전기 모씨(박인진)는 개인적으로 우리 광복회의 정강과 일체 주장에 대하여 찬동을 표시하고 아울러 천도교청년단원...을 조선독립전쟁에 출동시킬 의향을 명시하고 장차 광복회와의 보다 긴밀한 연계를 취할 것 등을 굳게 약속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창선의 권유에 의해 천도교 풍산군 대표 李景云도 광복회에 가입하였다. 당시 일제측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조국광복회’와의 관계자는 조선 국내에 약 200명, 장백현 내에 약 300명으로 추정하고 있었다.<sup>101)</sup> 일제는 1937년 10월10일부터 12월 중순까지 두 차례 걸쳐 조선 내에서 162명, 장백현에서 60명 모두 222명을 검거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혜산사건’이었다. 이 사건이후 특히 1938년에 천도교 구파인 박인호 등이 일제에 검속됨으로서 천도교의 교세는 국내는 물론이고 만주에서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 IV. 맺음말

위에서 필자는 만주국시기의 종교 정책과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총체적

으로 다루다보니 논술이 아니라 단순한 서술에 지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 일제의 대륙 침략의 부속물로 건립되고 또한 시종 전란과 침략전쟁의 혼동과 동원으로 존속되다가 14년이란 단명으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만주국’·‘만주제국’, 이 특수한 ‘근대 국가’의 ‘독립성’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특히 일제의 ‘선만일체’라는 식민지 체계 속에서 재만 조선인의 사회적 위치는 비록 외형적으로 만주국의 ‘국민’, ‘五族’의 일원이라는 명분은 갖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들은 여전히 나라를 잃은 ‘반도인’으로서 ‘일본신민’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사회적 위치를 밝히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신앙활동을 객관적이고 실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전제이다. 재만 조선인은 만주국시기에 ‘오족’의 일원으로, 만주국의 ‘국민’으로 대우를 받았는데 이것은 일제의 ‘以韓制夷’의 정책에 이용되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즉 재만 조선인은 일제가 만주국을 지배함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불온’의 가장 위험한 존재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신민’으로서 기타 다른 민족에 비해 제일 믿음직한 ‘一體’로 간주함으로써 그들에 대해 ‘통제’와 ‘이용’이라는 이중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된 이유와 동기를 쉽게 엿볼 수 있다.

만주국시기의 종교정책은 일제가 식민지 국가인 ‘괴뢰정부’에 대한 식민지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정책은 시기적 상황에 따라 변모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만주국은 초기에 이른바 ‘근대 국가’의 독립성, ‘인본주의’에 입각한 ‘복지국가’ 및 ‘오족협화’를 통한 ‘왕도낙도’ 그리고 ‘건국정신’에 기초한 ‘대동이상’과 ‘동아평화’라는 간판을 내걸고 표면상에서 ‘신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용’하고 있었지만 실상 내면에는 이러한 ‘신교 자유’가

100) 조선총독부경무국 편(김봉우 역), 『日帝植民統治秘史:일제하 조선의 치안 상황』, 청아출사, p.344.

101) Ibid, p.344.

‘왕도’ 혹은 ‘황도’의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정책-감시와 제한, 압제와 탄압을 실시하였다.

만주국시기에 일제의 재만 조선인에 대한 정책은 ‘통제’와 ‘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을 보면 대부분 종교 단체는 일제의 ‘이용’정책에 의해 ‘황민화운동’에 부응하면서 정교밀착이라는 종교의 보편적인 보수성을 보여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교분리’를 주장하면서 ‘순수한 종교’활동을 지향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는 ‘친일·반공’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재만 조선인의 기독교의 여러 교파는 일제의 ‘일체화’정책에 의하여 ‘만주조선기독교회’로 연합된 후에 공개적으로 친일·반공의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천주교는 ‘성전’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개별 종교 단체(혹은 개별적인 종교인들) 즉 대종교, 청림교, 증산교 및 천도교와 같은 신종교는 시국의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의 영활성을 보이면서 종교적 형식과 신앙적 방식을 통해 ‘순수한 종교’활동의 범주를 초월하여 반일적인 경향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었지만 결국은 일제의 ‘통제’정책에 의해 무력적인 탄압을 받았다.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의 특징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첫째는 종교의 ‘부흥’- 만주국시기에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은 일제의 이른바 ‘신교 자유’의 정책에 의하여 또한 그들은 ‘오족’의 구성원으로 만주국의 ‘국민’이라는 법적인 위치에 의해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활동은 과거 보다 크게 ‘부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는 친일·반공적인 태도-일제의 파시즘통치에 의해 또는 종교의 보편적인 특징인 보수성에 의하여 대부분 종교 단체는 과거의 반일적인 태도를 개변하고 ‘순수한 종교’활동을 하면서 자아 보존을 위해 일제의 ‘황민화정책’에 부

응하는 친일·반공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물론 일부 개별 종교인들이 개인적인 반일 감정이 표출되기도 했으나 극히 소수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그 종교 단체의 정치적 태도를 대변하지 못하다. 셋째는 신종교의 소실-재만 조선인들의 종교는 정치적 태도에 따라 ‘친일 종교’ 혹은 ‘순수한 종교’ 혹은 ‘반일 종교’로 획분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대종교, 청림교, 증산교 및 천도교는 시국의 변화에 따라 반일적인 성격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결국 일제의 탄압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으며 또한 광복 직후의 정세 변화에 따라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논문요약」: 만주국의 종교정책과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

연변역사연구소 최봉룡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비해 그들의 종교 활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이 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이 대부분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부응한 친일적인 측면에 의한 懷疑에서 비롯되는 의도적인 회피, 그리고 이 시기 재만 조선인들의 종교 활동에 대한 중시가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 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을 전체사적인 시각에서 만주국의 건립과 재만 조선인의 사회적 위치, 만주국의 종교정책 그리고 재만 조선인의 종교에 대한 일제의 ‘통제’와 ‘이용’ 정책 및 그러한 정책에 대응하는 각 개별 종교 단체의 태도 양상을 밝히면서 종교민족주의의 역할과 한계점을 實事求是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만주국의 건립과 재만 조선인의 사회적 법적인 위치는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이며 또한 일제가 재만 조선인에 대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滿洲國建國宣言」에서 제시된 ‘민족협화, 공존공영’의 국가운영의 기본방침·건국이상’에 의해 재만 조선인은 만주국에서 ‘五族’의 하나로 일본인과 함께 만주국 국민의 주체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종족우월주의론에 입각하여 일본인을 중심으로, 또한 재만 조선인을 ‘일본계국신민’의 일부인으로 취급하면서 “만주에 있어서 ‘五族協和’라고 하는 것은 內地人을 中心으로 하여 타민족이 協和한다는 意味로써 內地人이야말로 王道樂土建設의 主腦者로 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37년 12월, 일제는 만주국에 있어서 「치외법권의 철폐 및 남만주철도부속지행정권의 이양에 관한 조약」을 통해 치외법권의 철폐를 공식적으로 선포함으로써 만주국은 표면적으로 ‘완전한 법치국’, ‘민족협화의 건국이상’을 실현한 듯 하였지만, 실제상에서 사법재판에 관한 「특칙」과 「滿日司法事務共助法」을 제정하여 日系 즉 일본인과 조선인을 포함하는 ‘섭외사건’에서 특수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재만 조선인은 광복될 때까지 의연히 ‘일본신민’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의 이러한 사회적 법적인 위치는 만주국의 종교정책과 재만 한인의 종교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이다.

만주국의 종교정책은 한마디로 통제와 ‘이용’이라는 재만 조선인에 대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32년 3월 10일에 반포된 「인권보장조례」(12條) 제3조에는 “만주국 인민은 종족, 종교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국가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었다. 이것은 만주국이 근대적인 ‘독립국가’, ‘법치국가’로서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 만주국의 ‘국민’ 혹은 ‘인민’에게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법적인 형식으로 확립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조목이다. 그리고 만주국은 국민 정신의 함양을 위해 ‘왕도’를 국시로, 禮教-공교를 국교로 삼았던

하나의 종교 국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만주국 초기에 종교사무는 1부(府)3원(院) 8부(部)로 구성된 국무원 산하의 민정부 후생사에서 관리하였다. 1934년 3월 ‘만주제국’으로 국호를 개칭한 후 ‘帝制’를 실시함에 따라 「정부조직법」과 「인권보장조례」를 개정, 반포하였는데 국무원 산하의 民生部大臣은 교육, 예교, 사회, 보건 및 기타 민생안정에 관한 대권을 장악, 民生部厚生司 教化科에서 종교 사무를 주관하고, 각 성은 민생청(신경 특별시는 행정처)에서, 각 시/현(혹은 旗)에서는 教化處에서 관리하였다. 그리고 만주국은 종교정책의 실행은 관민병행의 방침으로 ‘협화회’, 혹은 조선인 민회에서 종교간의 분쟁이나 마찰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중일전쟁이 발생한 후, 일제는 만주국의 전시체제 속에서 종교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는데 그것은 1938년 9월 24일 반포된 民生部令 第93호 『暫行寺廟及布教者取締規則』(이하 「규칙」으로 약칭)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1940년 5월 15일 「國本奠定詔書」를 반포하여 만주제국은 “천조대신의 神祇와 천황폐하의 보호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天照大神을 建國의 元神으로 삼고 건국신묘를 창건하였는데, 이것을 만주국의 ‘정신적 건국’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만 양국의 정신적·영혼적인 一體를 법적인 제도로 합리화하기 위해 그 해 7월 15일 「조직법」을 개정하여 “황제는 나라의 제사를 행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사부관제」 및 「建國神廟祭祀令」을 수정, 반포함으로써 만주국은 명실공히 정교일치, 즉 과거의 유교적인 ‘왕도정치’는 완전히 ‘황도정치’로 바뀌게 되었으며, 天照大神은 여러 종교들의 신들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국신·‘만주국의 원신’으로 최고 무상의 위치를 갖게 되었다. 이로서 일제는 만주국 국민들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강요할 수 있는 법적인 준거를 마련한 셈이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활동을 외래종교, 전통종교 및 신종교 세 유형으로 나눈 다음 만주사변 전후의 각 개별 종교 상황에 대한 비교를 통해 그 지형변화의 살펴보면서 만주국시기에 이르러 재만 조선인의 여러 종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그 중에서 전통 종교-유교와 불교는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교세를 확대하고 있었는데, 일제의 회유에 의해 그 신도들은 점차 순수한 종교신앙으로부터 점차 황민화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외래 종교-기독교와 천주교는 점차 종교민족주의적 색채가 희석되면서 ‘親滿·親日·反共’의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었음을 지적 하였다. 그러나 재만 조선인의 신종교들 중에서 일부 민족적 양심과 항일정신을 소유한 종교인사들에 의해 반일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일무장운동단체(예컨대 동북항일연군)와 연대를 유지하면서 항일민족해방운동에 적극적인 참여하였지만 일제의 탄압을 받고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 사례인 대종교의 ‘임오교변’(1942년 11월), 청림교의 ‘영막전사건’(1944년 12월) 그리고 ‘중산교사건’(1942년) 및 ‘재만 한인조국광복회’의 민족통일전선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참여했던 천도교인들의 ‘혜산사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의 특징을 개괄한다면 첫째는 여러 종교는 ‘부흥’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 둘째는 각 개별 종교단체는 일반적으로 친일·반공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 셋째는 일제의 각 종교 교과의 일치화정책에 의해 각 개별 종교의 교과는 통합 양상을 보이었던 것, 넷째는 일제의 탄압에 의한 대부분 신종교의 위축·소실하게 되었다.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을 통해 종교와 정치의 미묘한 연관성-즉 정교밀착이라는 종교의 보편적인 보수성으로 말미암아 종교민족주의의 그 한계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要(若)文

滿州國期宗教政策と在滿朝鮮人の宗教活動

崔峰龍(中國 延邊歷史研究所)

1.はじめに

滿州國期在滿朝鮮人に對する研究は多岐に渡り、多くの成果を上げているのに對し、彼らの宗教活動に關する研究は相對的に進んでない状態といえる。その原因はどこにあるのか。それは當時期の在滿朝鮮人の宗教活動の大部分が日帝の植民地支配政策に應じた親日的な傾向による懷疑からはじまる意圖的な懷疑なのか、そうでなければこの時期在滿朝鮮人らの宗教活動に關する研究關心が足りなかつたのかはわからない。

滿州國期在滿朝鮮人の宗教活動を全體史的な視點から見るのは當時期日帝の植民地支配政策の本質を再認識し、在滿朝鮮人の政體性を照り直し、またこの時期の宗教民族主義の役割と限界お實事求是的に評價したいと思う。筆者はここで滿州國期在滿朝鮮人の社會的地位や滿州國期の宗教政策、そして在滿朝鮮人の宗教に對する日帝の「統制」と「利用」政策及びその政策に應じた各個別宗教團體の態度などを詳論することにする。

2. 日帝の在滿朝鮮人に對する支配政策

1) 「滿州國」の建立と「朝鮮時間問題」

滿州國の建立と在滿朝鮮時の地位は彼らの宗

이 글에서 필자는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활동을 외래종교, 전통종교 및 신종교 세 유형으로 나눈 다음 만주사변 전후의 각 개별 종교 상황에 대한 비교를 통해 그 지형변화의 살펴보면서 만주국시기에 이르러 재만 조선인의 여러 종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그 중에서 전통 종교-유교와 불교는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교세를 확대하고 있었는데, 일제의 회유에 의해 그 신도들은 점차 순수한 종교신앙으로부터 점차 황민화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외래 종교-기독교와 천주교는 점차 종교민족주의적 색채가 희석되면서 ‘親滿·親日·反共’의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었음을 지적 하였다. 그러나 재만 조선인의 신종교들 중에서 일부 민족적 양심과 항일정신을 소유한 종교인사들에 의해 반일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일무장운동단체(예컨대 동북항일연군)와 연대를 유지하면서 항일민족해방운동에 적극적인 참여하였지만 일제의 탄압을 받고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 사례인 대종교의 ‘임오교변’(1942년 11월), 청림교의 ‘영막전사건’(1944년 12월) 그리고 ‘중산교사건’(1942년) 및 ‘재만 한인조국광복회’의 민족통일선전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참여했던 천도교인들의 ‘혜산사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의 특징을 개괄한다면 첫째는 여러 종교는 ‘부흥’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 둘째는 각 개별 종교단체는 일반적으로 친일·반공적인 경향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 셋째는 일제의 각 종교 교과의 일치화정책에 의해 각 개별 종교의 교과는 통합 양상을 보이었던 것, 넷째는 일제의 탄압에 의한 대부분 신종교의 위축·소실하게 되었다. 만주국시기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을 통해 종교와 정치의 미묘한 연관성-즉 정교밀착이라는 종교의 보편적인 보수성으로 말미암아 종교민족주의의 그 한계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要(若)文

滿州國期宗教政策と在滿朝鮮人の宗教活動

崔峰龍(中國 延邊歷史研究所)

1.はじめに

滿州國期在滿朝鮮人に對する研究は多岐に渡り、多くの成果を上げているのに對し、彼らの宗教活動に關する研究は相對的に進んでない状態といえる。その原因はどこにあるのか。それは當時期の在滿朝鮮人の宗教活動の大部分が日帝の植民地支配政策に應じた親日的な傾向による懷疑からはじまる意圖的な懷疑なのか、そうでなければこの時期在滿朝鮮人らの宗教活動に關する研究關心が足りなかったのかはわからない。

滿州國期在滿朝鮮人の宗教活動を全體史的な視點から見るのは當時期日帝の植民地支配政策の本質を再認識し、在滿朝鮮人の政體性を照り直し、またこの時期の宗教民族主義の役割と限界お實事求是的に評價したいと思う。筆者はここで滿州國期在滿朝鮮人の社會的地位や滿州國期の宗教政策、そして在滿朝鮮人の宗教に對する日帝の「統制」と「利用」政策及びその政策に應じた各個別宗教團體の態度などを詳論することにする。

2. 日帝の在滿朝鮮人に對する支配政策

1) 「滿州國」の建立と「朝鮮時間問題」

滿州國の建立と在滿朝鮮時の地位は彼らの宗

教活動を考察する際前提となるものである。1931年3月1日滿州國の建立とともに發表された「滿州國建國宣言」で「民族協和」「共存共榮」を新國家運營の基本方針—「建國理想」と提示支那が「すべからく新國家領土内に居住する者は種族の岐視、尊卑の分別をしない。原有の漢族・滿族・蒙族及び日本・朝鮮の各族を除外

し、その他の國人も長久の居留を願う者もまた平等に待遇され、同じ權利を保障し少しの侵損もしない」と明文化する事によって各民族の「平等」と「協和」を主張するとともに、在滿朝鮮人は滿州國で「5族」の一つとして日本人とともに滿州國國民の主體と認められていた。しかし、滿州國において日帝は種族優越主義に立ち、日本人を中心に、また在滿朝鮮人を「日本帝國臣民」の一部と扱いながら「滿州における「五族協和」というのは内地人を中心に他民族を協和するという意味で、内地人こそ王道樂土建設の主腦者となる者である」と主張した。

一九三七年十二月、日帝は「滿州國における治外法權の撤廢及び南滿州鐵道付屬地行政權の移讓に關する條約」を通し、治外法權の撤廢を公式的に宣布刷ることによって、滿州國は表面的には「完全な法治國家」「民族協和の建國理想」を實現したかに見えたが、實際上司法裁判に關する「特勅」と「滿日司法事務共助法」を制定し、日系及び日本人と朝鮮人を含む「攝外事件」で特殊な手續きが規定されていたゆえ、在滿朝鮮人は解放まで依然として「日本臣民」という身分から逃れる事ができなかった。

## 2) 滿州國期の宗教政策—「統制」と利用

1932年3月10日に發表された「人權保障條例」(12條)第3條には「滿州國人民は種族、宗

教の如何」にも關わらず、すべて國家の平等な保護を受ける」と規定されている。これは滿州國が近代的な「獨立國家」「法治國家」であることを示すため、滿州國の「國民」または「人民」に宗教信仰の自由を保障することを法的な形式として確立していた事を示している條目である。そして、滿州國は國民精神を涵養するため「王土」を國是に、禮教—公教を國教とした一種の宗教國家の色も帯びていた。

滿州國初期の宗教事務は、1府3院8部から構成された國務院傘下の民生部更生司が受け持っていた。1934年3月「滿州帝國」に國呼を改稱した後、「帝制」を實施することにより、「政府組織法」と「人權保障條例」を改正・發表し、國務院傘下の民生部大臣は教育、禮教、社會、保健及びその他民政安定に關する大權を握り、民生部厚生司教化課で宗教事務を主管し、各省は

民生廳(新京特別市)で、各市/縣(または旗)では教化處で擔當した。そして滿州國は宗教政策を實行するのにおいて官民並行の方針から「協和會」(または「朝鮮人民會」で宗教間の紛争や摩擦を調節する機能を擔當した。

1938年9月24日に布告された民生部令第93號「暫行寺廟及布教者取締規則」(以下「規則」と略稱)には滿州帝國の宗教政策の本質が如實に表れている。すべて14條からなるこの「規則」には寺廟(寺刹、教會、布教所を含む—第一條)に對する國家的統制が明確に規定されている。この規則により、各省では布教者の資格獲得條件及び布教者身分證明書の管理方法を厳しく規制していた。例えば、間島省の場合、1939年2月2日に布告された間島省令第5號「間島省布教者身分證明書發給規則」(第11條)によると、民生部令第93號に基づき布教者身分證明

書に關する詳細な内容になっている。

1940年5月15日「國本奠定詔書」を發布し、滿州帝國は「天照大神の神床と天皇陛下の保護に依べからず」といい、天照大神を建國の元神とし、建國神廟を創建し、これを滿州國の「精神的建國」であるといった。このような日滿兩國の精神的・靈的な一體を法的制度として正當化するため、その年の7月15日「組織法」を改正し、「皇帝は國の祭事を行う」と規定すると同時に「祭祀部管制」及び「建國神廟祭祀令」を修正し、發表することで滿州國は名實共に政教一致、すなわち過去の「王土政治」は完全に「皇道政治」に變わるようになり、天照大臣は様々な宗教の神の中でも政治的にまた現實的に國神一「滿州國の元神」という最高無上の地位を占めるようになった。これによって日帝は滿州國國民に「神社參拜」を強要できる法的な基準を作ったのである。

### 3. 滿州國期在滿朝鮮人の宗教活動

在滿朝鮮人の宗教信仰生活は彼らが滿州に移り住み、定着してからはじまった。彼らの信仰をみると、外來宗教一キリスト教、カトリック、傳統宗教一儒教と佛教及び新宗教一東學教系の天道教、侍天教、祭雨教(?),水雲教、靑林教、円宗教、檀君教系の檀君教、大宗教及び吁○教系の太乙教、普天教、蒸山教などと共に「宗教の王國」と呼ばれていた北間島だけでも19の宗派が存在した。

1925年北間島朝鮮人の宗教狀況(「表1」)を見ると、教會(または寺院)が全部で154ヶ所、總信徒數は37,073名で、そのなかでキリスト教(プロテスタント,カトリック)系の信徒數が約47.3%で第一位を占めており、その次ぎに儒教

が27.3%、天道教は10.0%大宗教は5.7%の順擔っている。そしてここで注目されるのは親日宗教の侍天教が北間島で一定の影響力を行使していたが、それは主に日本領事館の管轄區域の集中していた。1930年になって、北間島朝鮮人の宗教狀況(「表2」)を見ると、教會または寺院の總數は116ヶ所、信徒數は34,540名に減少している。しかし、滿州國期になって在滿朝鮮時の宗教狀況(「表3」)を見ると、急激に増加する傾向を見せている。「表1」「表2」は北間島地域の朝鮮人の宗教活動が萎縮された側面を見せているとしたら、「表3」は滿州國建立後在滿朝鮮人の宗教活動が「復興」された側面を語っている。

#### 1) 傳統宗教一儒教と佛教

儒教は滿州國期に間島地域を中心に教勢が擴大され、大きく公教會派と大成儒教派と分かれる。1936年6月の統計によると間島地域に5ヶ所の教會、信徒數は54,515名に達した。1938年以降滿州國で日帝の皇民化政策が強まるにつれて創氏改名、朝鮮語使用の禁止などが強要されると、儒林らの作った「郷約」では民族言語を教え、民族の歴史や文化を傳授したりもした。しかし、一部の儒林會は日帝に「利用」され、親日的側面を顯したりもした。例えば、1935年王青縣のベチョ區と雙下村の儒林會は局子街儒林會の支會として設立され、親日分子の背後の支持を受けていた。

佛教は主に間島地域を中心に布教され、他宗教に比べ相對的に政治的な色合いが薄い「純粹」な宗教として、その影響力はそれほど大きくはなかった。1934年に14ヶ所の寺に信徒數が2,441名だったのが1936年には3,301名に増えた。滿州國期に間島地域の佛教は二つの教派

に分かれ、一つは朝鮮佛教系の貴柱寺(?)派と大覺寺派を中心とする一派で、もう一つは日本佛教系の淨土宗、曹洞宗、禪宗派を中心とする一派だった。當時日帝と滿州國政府は佛教を擁護する懐柔政策を廣げており、また佛教の側からもいわゆる「戒煙」「戒酒」運動を起し教勢が擴大されつつあった。1938年9月、滿州國民生部の「暫定規則」が發効され、宗教に對する日帝の統制と壓制が激しくなるにつれ、在滿朝鮮人の佛教は朝鮮の佛教教會の操縱下で、各派が「協會」に網羅され、親日思想の宣傳や大陸侵略政策に順應支那がら教勢の擴大に努めた。

1944年10月間島省には20ヶ所のお寺に4、578名の信徒數に達す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

## 2) 外來宗教—キリスト教とカトリック

キリスト教は早い時期から南滿の朝鮮人らの間に布教され、最初は南滿で、その後は間島を中心に發展し、徐に北滿へと擴大され、教派は長老教派、監理教派、東亞基督教派、

朝鮮基督教會、聖潔教派、安息日教派などがあつた。滿州國期に様々な教派のなかで長老教派と監理教派は其々教勢擴張のため、勢力争いを繰り返しながらその影響力を見せてきた。

1940年五月19日、滿州朝鮮人キリスト教6つの教派の代表は新京に集まり、「朝鮮キリスト教同盟」結成に關する第一次會議を開き、連盟の「宣言書」を發表、翌年8月新京で第二次連盟會を召集し、「聲明書」を發表し、「從來の歐米自由主義に依存する思想を一掃し、共產主義を排撃し建國精神に従い、宗教普及につとめ國民としての責務につと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親滿(日)・反共の道を進んだ。その年11月24日、新京中央教會で決議が決められたあと

「合同」結成がなされ、教區は新京、東滿、北滿、奉天、安東と南滿の6つし、事務所は新京に設置され總會傘下總務局、教育局、教務局、布教局、出版局、稅務局など6ヶ所の局を置き、奉天西搭教會の長老教の牧師の鄭相仁が第一臨時總會長に選任された。

カトリックは早い時期から1896年に間島から伝わり、滿州國期になつても間島地域がまた中心舞台の役割を果たした。滿州國の建國後1934年4月ローマ法皇廳は滿州國を事實上承認し、8月2日ローマ法皇廳の布教政廳から謝外交大臣に「親書」を交付し、吉林布區の高徳惠を「宗座代表」に任命した。この親書には「滿州國の文明教化の發展に寄与し、宗教的に滿州國を承認する」との主旨が含まれていた。滿州國においてローマ法皇廳の權威を体現する「宗座代表」は滿州國のカトリックの信者らに滿州帝國を「愛」し、帝國政府に「服從」することを要求した。延吉教區の白化東主教は神父らにこの精神を伝えると同時に、特に各教會の學校に「宗座代表」の指示を尊守することを要求した。

1941年太平洋戰爭が勃發した後、英米などの國からの外國宣敎使らはすべて滿州國から驅逐されたが、カトリック系のドイツ神父らは「三國同盟國」の國民として滿州國に留まり、宗教活動を續けることができた。1942年初にローマ法皇廳の「告示」により、カトリックの信者らの「信者參拜」が許され「聖戰」一侵略戰爭のための「獻納運動」が行われた。1942年12月延吉教區の白和同主教は同盟三國の「反共協定」精神に基づき、管轄區域各本堂の司鐸らに「大東亞聖戰の勝利のため祈ろう」という諭示を發送すると共に全體教區の本堂神父らを教區に集め「聖戰勝利」のミサを上げ、それ

から彼らは日帝が敗北するまで主教の諭示を實行した。

### 3) 新宗教—大宗教, 靑林教, 會山教, 天道教

在滿朝鮮人らは外來宗教(カトリック, プロテスタント)と傳統宗教(儒教, 佛教)を除き, 呪術的な民間信仰を持っていた。在滿朝鮮人らの新宗教の系譜を見ると, その大部分が朝鮮國內で發生されたものなので本部は朝鮮國內にあったが, 大宗教, 円宗教は北間島に本部をおいて活動していたが, 日帝の壓制により北滿に本部を移して活動した。滿州國期に彈壓を受けた大宗教の「壬辰教變」(1942.11), 靑林教の「ヨンマクジョン事件」(1944.12)それから「會山教事件」(1942)及び中共系列の抗日連軍で「高麗紅軍」と呼ばれていた第2軍第6師の「民族統一戰線政策」に積極的に協力した天道教徒の活動について簡単に検討した。(略)

### 4. おわりに

滿州國期における日本の在滿朝鮮人政策は「統制」と「利用」という兩側面を合わせ持っていたので, 在滿朝鮮人の宗教活動は宗教團體の大部分が日本の「利用」政策により「皇民化運動」に包攝されながら, 政教密着という宗教の普遍的な保守性を見せ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 特に「政教分離」を主張しながら「純粹な宗教」活動を志向していたとしても, 彼らの政治的な態度は一般的に「親日・反共」の立場をとっていたことが分かる。

滿州國期在滿朝鮮時の宗教活動の特徴はまず, 宗教の「復興」, 親日・反共的な態度、日帝の彈壓による大部分の新宗教の消失と概括される。滿州國期在滿朝鮮人の宗教活動を通じ, 政治と宗教との癒着という宗教の普遍的な保守性のゆえ, 宗教民族主義はその限界を充分に表していたといえる。

주제어 : 만주국, 종교정책, 재만조선인, 외래종교, 전통종교, 신종교